

# 충북 자활근로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책임연구 : 한애경(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최은희(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해진(여성학 박사)

연구지원 : 곽경녕(충북여성재단 위촉연구원)



# 발 간 사

최근의 성주류화 조치는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였습니다. 이로써 2016년 개정된 ‘성별영향평가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법적 근거 하에 시도된 충청지역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연구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매우 이상적인 빈곤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을 도입하고 운영한지 1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활성과 미흡과 빈곤의 여성화를 고착시키는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여성참여율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여성의 욕구를 잘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요구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여성은 물론 남성과 사회통합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율이 높은 여성을 정책수요자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자활근로사업을 둘러싼 이러한 정책동향에 근거하여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을 살펴보고 성인지적 정책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토대로 법령·조례 분석,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지역현황 분석, 사업내용 분석, 실무자 및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본 연구가 자활근로사업의 성인지적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견을 주신 학계와 현장 전문가, 실무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심층연구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주신 사업참여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권수이



# Ⅰ. 서 론

## 1. 연구배경

- 최근의 성주류화 조치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책임을 「성별영향평가법」을 통해 권고하고 있음. 2016년에 동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항목이 신설되었음(제10조의2).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집행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정책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분석대상은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나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임.
- 이와 관련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2015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주제로 ‘일자리정책’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본 연구는 일자리정책 중 취약계층 대상의 대표적인 근로 연계형 빈곤정책인 자활근로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이상적인 빈곤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자활사업을 도입, 운영한지 1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활률이 낮다거나 사업내용이 빈곤의 여성화를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한편, 자활근로사업에 여성참여율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충북지역도 이와 유사함. 이러한 결과는 자활근로사업이 다른 어떤 사

업보다도 여성의 욕구를 잘 반영하여 저소득층 여성이 정책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근로사업 운영이 참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목표를 상정하고 가는가에 대한 점검과 다른 하나는 자활근로사업에서의 성인지적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음.

## 2.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틀

-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토대로 자활근로사업에 관해 분석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첫째, 자활근로사업 전반에 관한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 및 활용 정도
  - 둘째,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요구차이 : 사업이 성별에 따른 특성과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도
  - 셋째, 사업수혜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특성 반영 정도
  - 넷째,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법령(지침포함)의 개선방안
  - 다섯째, 의사결정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

### 2) 연구방법

- 연구의 틀에 입각하여 문헌검토, 관련 조례 및 자활사업 지침 분석, 행정 통계자료 가공·분석, 참여자 및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 첫째, 자활근로사업의 성인지적 통계현황 파악을 위해 사회보장 통

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계, 중앙자활센터 성과평가 통계자료를 가공·분석하였음.

- 둘째,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의 원인 및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15명의 사업참여자와 7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음.
- 셋째, 사업수혜에서의 성별에 따른 특성 반영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12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음.
- 넷째,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활사업 시행의 기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안내(지침),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정을 성별영향평가 관점에서 검토하였음.
- 다섯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성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침에 따른 지역별 현황분석이 이루어졌음.

## II. 자활근로사업 관련 현황 및 자료 분석

### 1. 자활근로사업 관련 성인지적 통계 현황

- 2018년 현재 충북 자활참여자는 641명임. 성별로 여성 410명(64.0%), 남성 231명(36.0%)으로 여성참여자가 남성보다 179명 더 많은 가운데 시군별로 괴산은 여성참여자 수 보다 남성 참여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형 401명(62.6%), 시장진입형 참여자 222명(34.7%), 인턴도우미 16명(2.5%)으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최근 3년간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충북이 전국수준에 비해 여성의 참여비율은 더 높고 남성은 더 낮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여성참여자의 비율은 미미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성참여자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변동추이

(단위 : 명, %)

|    |   | 자활사업 | 2015    | 2016    | 2017    |
|----|---|------|---------|---------|---------|
| 전국 | 여 | N    | 707,471 | 864,879 | 848,210 |
|    |   | %    | 56.3    | 55.1    | 54.7    |
|    | 남 | N    | 548,664 | 704,687 | 703,497 |
|    |   | %    | 43.7    | 44.9    | 45.3    |
| 충북 | 여 | N    | 897     | 1,181   | 944     |
|    |   | %    | 64.3    | 68.9    | 64.6    |
|    | 남 | N    | 499     | 532     | 518     |
|    |   | %    | 35.7    | 31.2    | 35.4    |

주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각 년도 재편집. 각 년도의 기준은 전년도 12월임. 복지정책과 자료

-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하여 성인지적 통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활근로사업과 관련한 통계자료가 사회보장통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중앙자활센터의 성과평가 통계자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전반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료는 매우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를테면 지역에서 자활근로사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중앙자활센터에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자활근로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매년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기초통계자료가 제공된다면 성별영향평가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맞춤형 자활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임.

- 한편 자활사업 진입단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자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고 있는데 반해 성과평가는 시·도 단위의 취·창업률 이외에 지역의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함의점을 줄 수 있는 통계자료가 산출되지 않고 있음.

## 2. 조례·지침 분석

- 자활사업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남, 제주 지역이었으며 자활기금에 관한 조례만 마련되어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지역임. 자활사업과 자활기금에 대한 조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지역임.
- 각 지역의 조례는 대상자의 자활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자활지원계획수립과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음. 충북지역은 자활지원사업기금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사업관련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5조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사업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위원회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심의·의결권을 가진 기구라는 점에서 대표성이 높은 기구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운영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위원 수, 위원의 성비에 관한 사항은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2018년 기준 충청북도의 12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위원회 구성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지역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 수나 성별비율은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임. 전반적으로 남성 참

여자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일부지역은 여성 운영위원이 전무한 지역도 발견됨.

### 3. 사업내용 분석

- 충북의 12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구성은 여성친화적 일자리로 간주되어 왔던 일자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요리, 식품 및 가공, 영농 등). 이는 지금까지 참여자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운영 결과로 해석됨.
- 그러나 최근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남성근로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 수요자의 욕구에 기반한 사업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2018 자활사업 안내’에서는 광역자활센터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하여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어 광역단위에서의 사업개발 필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음.

### 4. 참여자 및 실무자대상 FGI 분석

#### 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특성과 성별요구차이

- 참여자 특성은 여성은 연령이 높아 일반노동시장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은 알코올의존증과 질병으로 인해 일반노동시장 참여에 장애가 있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즉 참여자들의 특성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사업단 배치에서 남성참가자들은 주로 육체적 힘을 요구하는 일이나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로 여겨져 왔던 영농, 집수리, 양곡 배송과 같은 분야에 배치되고, 여성참가자들은 청소, 요리, 영농, 가공식품 생산

등의 사업에 배치되어 일반노동시장과 유사하게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 현상이 발생하게 됨.

- 여성참여자 가운데 어린자녀나 환자가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적 여건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을 돌봄과의 병행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노동시장 참여 대신 선택하기도 함.
- 자활근로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자들 간 혹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하는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참여자들 사이에서 성희롱이 발생 했을 경우 센터가 개입하여 문제에 대처하나 발생 당시에는 사건이 노출되지 않아 실무자들이 사후적으로 파악하기도 함.
-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지원과 같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가 일부지역 참여자에 의해 제안됨. 업무 내용에 따라 환복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음에도 적절한 탈의실이 없어 창고를 이용하거나, 남성 동료의 시선을 돌리게 한 다음 환복을 하는 불편함을 드러냄

## 2) 사업실무와 실무자 근로 여건

- 사업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 알콜의존증이 많은 남성 참여자들과 우울증상을 보이는 여성참여자의 병리적 증상을 돌봐야 하는 업무 부담을 호소함.
- 참여자들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심지어 흥기를 소지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례와 같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있어 업무 스트레스 높은 것으로 드러남.
-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에 대해 생소해 하는 경향을 보임.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연령이 높거나 근로능력이 낮은 대

상자가 주를 이루게 됨. 이러한 이유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성과평과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사업운영이나 교육 등이 성과평가에 기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업무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Ⅲ. 자활근로사업의 성인지적 정책개선 방안

#### 1. 정부 개선 과제

##### 1) 성과평가 지표 개선

###### 가. 취·창업 위주의 성과중심 평가방식 개선

- 자활근로참여자의 성비 구성 및 연령, 인적자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나 창업이라는 성과 중심의 평가 기준은 제고될 필요가 있음.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장·노년의 저학력 빈곤 여성이어서 외부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나 창업이 쉽지 않음. 이에 더해 돌봄 노동을 해야 하므로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음.
- 다시 말해, 자활근로사업과 같이 근로역량이 취약한(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역량강화 대상자와 근로의욕증진 대상자)참여자를 대상으로 현행 취·창업 중심의 성과평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활률이 개선되길 기대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것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과정평가 지표 등을 정부차원에서 개발함으로써 단순히 경제적 지표로 측정되는 자활성과의 한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나. 성과평가의 성별분리통계 구축

- 자활사업에 관한 성별 분리통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과평가의 경우에는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앞서 성과평가 지표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향후 자활 성과평가 지표에 성별특성에 따른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료입력 단계에서 성별요소가 반영되어야 함.
- 이는 자활사업 성과 측면에서의 성별특성에 따른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성별에 따른 사업운영과 그 효과성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2) Gateway 전담관리사 배치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제시하고 있는 Gateway 전담관리사 배치기준 완화가 필요함. 자활관리사업에서 Gateway 과정은 참여자의 초기 상담부터 사정, 교육, 계획수립에 이르기까지 참여자의 자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사업현장에서 Gateway 전담관리사 배치는 매우 제한적임. 이는 자활근로사업 지침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70명 이상 이면서 Gateway과정 참여자 15명 이상인 경우'로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마을단위에서 인적자본이 취약한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에 Gateway 전담관리사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3) 운영위원회 성비규정 개선

- 현재 자활사업 지침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위원 수나 성비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지역마다 운영위원 수나 위원의 성비가 모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두었으나 사회복지사업 법에서 명시하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포함의 명시적 근거가 되지 못함.
- 이에 사업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형평성을 위해서는 지침을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자격요건, 위원 수, 성비 구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함.

## 2. 충청북도 개선 과제

### 1) 성인지적 통계기반 구축

- 지역의 자활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역의 충북지역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는 없는 상황임.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중앙자활센터에 의뢰하여 요청에 국한하여 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자활사업에 관한 지역의 통계자료가 구축된다면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과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자활사업에 대한 보다 집약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임.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관련 지침은 광역자활센터가 지역의 자활사업 관련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광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에 관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해야할 근거는

충분함.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됨.

## 2)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제정

- 자활사업은 80% 이상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지자체에서 개입의 여지는 크지 않음. 그러나 관련 조례가 마련된다면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근로사업 운영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지역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
- 특히 근로환경 개선이나 실무자들이 경험하는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조례와 같이 지자체 내의 법적근거가 더욱 요구됨.

## 3)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 성별형평성 유지

- 운영위원회의 성비규정을 준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지역 자활센터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자격요건이나 위원 수, 성비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12개 지역자활센터는 운영위원회는 모두 구성하고 있으나 위원 수가 모두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성비 구성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임. 여성위원이 전무한 경우도 발견됨
-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정부차원의 지침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서는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사업 심의·의결권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의사결정분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성별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권고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것임.

#### 4) 수요자 중심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활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함. 지역자활센터로 참여자가 의뢰될 경우 기존에 형성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등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음.
-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여성참여율이 비교적 높았던 근로영역 비중이 높게 나타남(부록참조). 이는 지금까지 자활근로사업에 여성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사업설계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능력이 취약한 남성 조건부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남성 참여자들의 유입을 고려한 자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8 자활사업 지침에 따르면 광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에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바 광역자활센터를 주축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자활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5)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일부 특정 지역에서 환복을 위한 탈의실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이 발견됨.
- 참여자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낮다 보니 일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인데, 고연령자의 비중이 높고,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에서 참여자들의 성별차이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 관심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됨.

## 6)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

- 참여자들에게 소득 증대는 안정적인 판로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특히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판로 구축이 지속적 생존의 근간이 되므로 가용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각 지역자활센터의 생산품에 대해 지역자활센터 자체 홈페이지, 충북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음.
-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한 방법으로 지역자활센터의 생산품 홍보관을 도청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함.

## 7) 수요자중심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 가. 참여자 대상 성희롱 방지 교육 및 예방교육 강화

- 참여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함. 현재 자활근로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생 양태나 대처 방식을 감안할 때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피해 대응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센터의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외부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할 경우 대처 방법과 센터의 조력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나. 센터 실무자 성인지 교육 지원

-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대상 성인지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지역 자활센터의 실무자들은 자활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 감수성’ 또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 실무자의 성인지 관점 역시 요구되므로 직무 교육 내용에 성인지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다. 센터 실무자들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지원

- 센터 실무자들의 감정노동으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심리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자활근로사업은 일자리 사업보다는 복지사업의 성격이 강해 실무자들은 일자리 관련 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하고, 알콜의존증과 우울증상을 보이는 참여자들의 병리적 문제까지 돌보는 감정노동자의 역할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음.
- 최근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 무료심리 상담 및 힐링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자활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 역시 감정노동으로 인한 심리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바 직원 연찬회, 워크숍 등 실무자 대상의 프로그램을 힐링을 주제로 하여 사업에 대한 피로감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임.

# 목 차

## I. 서 론

|                      |   |
|----------------------|---|
| 1. 연구배경 .....        | 3 |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 4 |
| 3. 연구수행 절차 .....     | 5 |

## II. 이론적 배경

|                              |    |
|------------------------------|----|
| 1. 자활사업 개요 .....             | 9  |
| 2. 자활사업 연구동향 .....           | 21 |
| 3. 자활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    | 26 |
| 4. 성별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및 중요성 ..... | 28 |
| 5.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 .....        | 31 |

## III. 자활근로사업 관련 현황 및 자료 분석

|                                |    |
|--------------------------------|----|
| 1. 자활근로사업 관련 성인지적 통계 현황 .....  | 37 |
| 2. 조례 및 지침 분석 .....            | 53 |
| 3. 사업내용 분석 .....               | 55 |
| 4. 자활근로 참여자 및 실무자 FGI 분석 ..... | 57 |

## IV. 결 론

|                               |    |
|-------------------------------|----|
|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           | 81 |
| 2. 자활근로사업의 성인지적 정책개선 방안 ..... | 84 |

|                                  |     |
|----------------------------------|-----|
| 참고문헌 .....                       | 95  |
| 부록 1. 성별영향평가법 .....              | 97  |
| 부록 2. 충북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및 사업내용 ..... | 105 |



# 표목차

|   |    |
|---|----|
| 〈표 Ⅰ-3-1〉 연구수행 절차                       | 6  |
| 〈표 Ⅱ-1-1〉 자활사례관리자 및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 현황 | 11 |
| 〈표 Ⅱ-1-2〉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 14 |
| 〈표 Ⅱ-1-3〉 자활급여                          | 13 |
| 〈표 Ⅱ-1-4〉 지역자활센터 설치 현황                  | 19 |
| 〈표 Ⅱ-3-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 32 |
| 〈표 Ⅲ-1-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 37 |
| 〈표 Ⅲ-1-2〉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변동추이               | 38 |
| 〈표 Ⅲ-1-3〉 수급지위별 자활사업대상자수                | 39 |
| 〈표 Ⅲ-1-4〉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자 수(16년 말)       | 39 |
| 〈표 Ⅲ-1-5〉 전국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성별            | 41 |
| 〈표 Ⅲ-1-6〉 전국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서비스유형별        | 42 |
| 〈표 Ⅲ-1-7〉 전국 자활근로사업 연평균 지급액             | 43 |
| 〈표 Ⅲ-1-8〉 충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성별            | 45 |
| 〈표 Ⅲ-1-9〉 충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성별·연령별        | 46 |
| 〈표 Ⅲ-1-10〉 충북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참여자            | 47 |
| 〈표 Ⅲ-1-11〉 충북 자활근로사업 월평균 급여             | 48 |
| 〈표 Ⅲ-1-12〉 충북 자활근로사업 사회보험가입자수           | 50 |
| 〈표 Ⅲ-1-13〉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지표 배점 구성          | 51 |
| 〈표 Ⅲ-1-14〉 자활 성과측정 항목                   | 52 |
| 〈표 Ⅲ-2-1〉 자활지원사업 관련 조례                  | 53 |
| 〈표 Ⅲ-2-2〉 지역별 운영위원회 성별 현황               | 54 |
| 〈표 Ⅲ-3-1〉 충북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구성 현황           | 56 |
| 〈표 Ⅲ-4-1〉 참여자 정보                        | 58 |
| 〈표 Ⅲ-4-2〉 센터 실무자 정보                     | 58 |
| 〈표 Ⅲ-4-3〉 인터뷰 내용                        | 59 |

# 그림목차

|  |    |
|--|----|
| <그림 II-1-1> 자활사례관리·Gateway 업무흐름도 ..... | 11 |
| <그림 II-1-2> 자활근로유형 .....               | 15 |
| <그림 II-1-3> 자활사업 추진체계 .....            | 21 |
| <그림 III-1-1>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변동추이 .....     | 38 |
| <그림 III-1-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비율 .....       | 40 |
| <그림 III-1-3> 자활근로사업 연평균 급여 현황 .....    | 44 |
| <그림 III-1-4>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 .....   | 47 |
| <그림 III-1-5> 자활근로사업 월평균 급여 .....       | 49 |
| <그림 III-2-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비율 .....       | 55 |

---

# I. 서론

---

1. 연구배경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 수행 절차

CBWF



## 1. 연구배경

- 최근의 성주류화 조치는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칠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책임을 「성별영향평가법」을 통해 권고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법」은 정책집행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시행중인 법령이나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한 성별영향평가 시행을 골자로 함
- 2016년에는 동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항목이 신설되었음(제10조의2). 이에 지자체에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셈임.
- 이와 관련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2018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주제로 ‘일자리정책’ 분야를 선정하였음.
- 본 연구는 일자리 정책 중 취약계층 대상의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빈곤정책인 자활근로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이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넘고 참여자들이 빈곤한 중장년층 여성으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 여성의 욕구를 잘 반영하여 정책과정에서 여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당위성에 근거함.
- 한편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제도 도입의 취지와 내용 면에서 볼 때, 매우 이상적인 빈곤정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자활사업을 도입, 운영한지 1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긍정적 평가보다는 비판적 평가가 많음
- 대표적으로 당초 자활지원제도에 걸었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성인지적 관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임.

- 실제로 자활사업을 통한 탈 자활은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경휘, 2013)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여성화된 일자리’로 서의 자활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임(엄명용 외, 2014).
- 물론, 빈곤한 남성 역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신체적 위협 등 다면적 위험 을 지니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지만 여성의 경우, 이러한 위험에 더하여 신체 적 조건이나 개인적 여건(자녀양육, 가족 돌봄 등) 등의 문제로 노동시장에 진 출한다 할지라도 남성과 견주어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평등한 여건에 놓일 공 산이 큼(엄명용 외, 2014)
- 이에 본 연구는 자활근로사업 운영이 참여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목 표를 상정하고 가는가에 대한 점검과 자활근로사업에서의 성인지적 정책을 실 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시도되었음.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II장에서는 자활사업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이 론적 논의를 다루었고 III장에서는 자활사업관련 성인지 통계 현황과 자활사업 조례·지침 분석, 자활사업 내용 분석, 사업참여자 및 실무자 대상의 FGI 진 행과 분석결과를 다루었음.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자활근로사업의 성인지적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2. 연구방법

- 자활사업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성별 격차의 현황을 분석하고 성인지 적 관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다 음과 같은 분석틀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었음.

### 1) 연구의 틀

- 성별영향평가 지침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분석할 평가항 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자활근로사업 전반에 관한 성별 분리 통계의 생산 및 활용 정도

- 둘째,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요구차이 : 사업이 성별에 따른 특성과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도
- 셋째, 사업수혜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특성 반영 정도
- 넷째,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법령(지침포함)의 개선방안
- 다섯째, 의사결정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

##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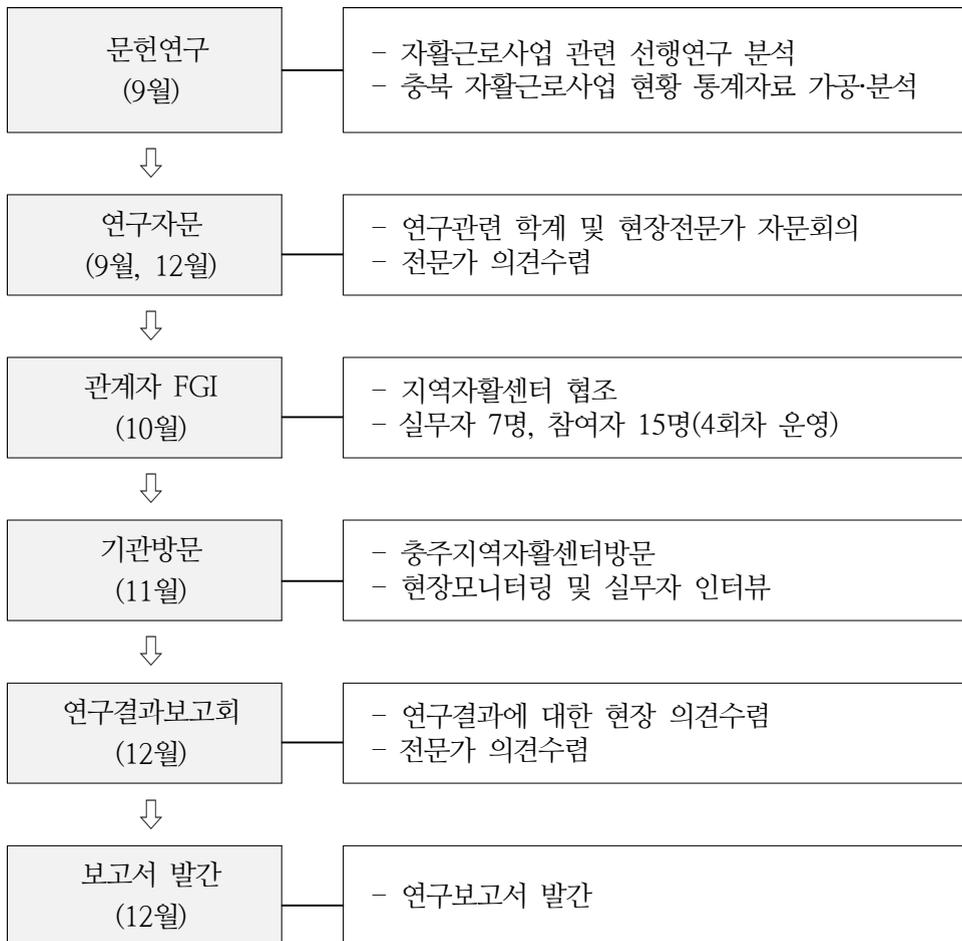
-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의 틀에 입각하여 문헌검토, 관련 조례 및 자활사업 지침 분석, 행정 통계자료 가공·분석, 참여자 및 실무자 대상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자활근로사업의 성인지적 통계현황 파악을 위해 사회보장 통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통계, 중앙자활센터 성과평가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가공·분석하였음.
  - 둘째, 자활근로사업의 운영 및 실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경제적, 신체적 차이의 원인 및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 12곳에 참여자 및 실무자를 추천받아 15명의 참여자와 7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총4회기에 걸쳐 FGI를 실시하였음.
  - 셋째, 사업수혜에서의 성별에 따른 특성 반영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12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 구성 및 사업내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자료와 대조한 분석이 이루어졌음.
  - 넷째, 정책 환경의 성별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활사업 시행의 기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사업안내(지침),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정을 성별영향평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하였음.
  - 다섯째,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성별 형평성이 유지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음.

- 여섯째, 연구과정에서 검토된 자활근로사업 현황 및 인터뷰 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 확보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직접 방문하였음.
- 일곱째, 연구설계, 연구추진과정,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전문가 자문이 이루어졌음.

### 3. 연구수행 절차

○ 본 연구의 수행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표 I-3-1>과 같음.

표 I-3-1 연구수행 절차



---

## II. 이론적 논의

---

1. 자활사업 개요
2. 자활사업 연구 동향
3. 자활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4. 성별영향평가의 법적근거 및 중요성
5. 성별영향평가관련 지표

CBWF



## 1. 자활사업 개요1)

### 1) 추진배경 및 과정

- 자활사업은 빈곤탈출을 위해 ‘시민사회’ 영역에서 시작된 빈민운동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 영역으로 포섭되어 ‘시장’에서 빈민들이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임.
-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자활지원서비스와 각종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해 빈곤 탈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됨.
  - 자활사업 참여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계급여를 제한함으로써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실직빈곤계층의 탈빈곤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시장 진입능력이 취약한 수급자에게는 재활·직업훈련·일자리 제공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적용하는 복지프로그램임.
- 자활사업은 강제와 지원 및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의 참여를 필요로 함
  - 근로능력자가 생계급여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의 취업노력과 함께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강제하는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반면, 수급자의 자활의지와 욕구를 존중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활프로그램을 통해 수급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적극적 측면
  - 통상적인 생계보호 외에도 근로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 취업관련 서비스, 창업지원 등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외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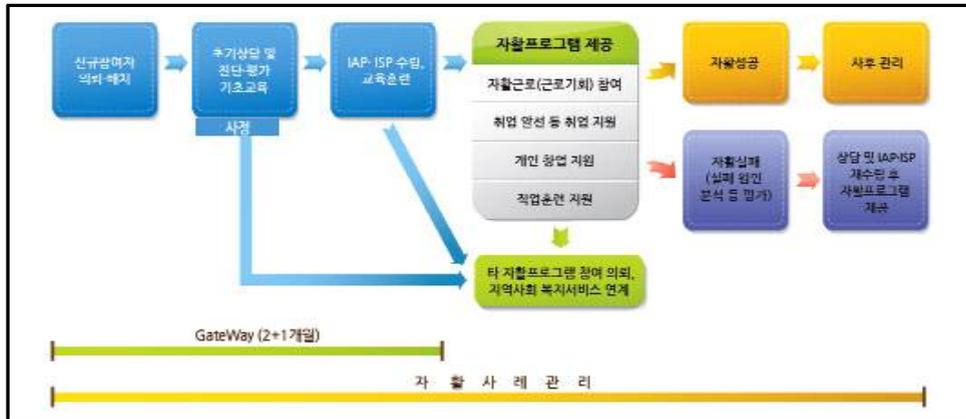
1) 2018년 자활사업안내(I)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함

요.

- 2004년 광역자활센터 시범사업을 2006년 까지 실시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취업형태와 업그레이트형에서 시장진입, 인턴, 사회적일자리, 근로유지형으로 다양화를 추진함.
- 2009년부터 사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활인큐베이팅 과정을 2012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음.
  - 자활인큐베이팅 과정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를 제공하고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설정 프로그램임. 자활인큐베이팅 과정은 2013년 Gateway과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활사례관리와 통합 운영됨.
- 2017년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 탈락자 등에 대하여 지자체 상담을 거쳐 조건부과 및 자활근로 참여조치를 시행하였음.
- 2018년 1월 시간제 자활근로 및 예비 자활기업을 도입함.

## 2) 자활사례관리

- 자활사례관리는 Gateway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지원과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자의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
  - 자활사례관리를 통해 자활방향 수립을 지원하며 자활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와 조정,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Gateway과정 대상자는 자활사업 신규참여자(조건부수급자, 희망참여자), 기존 자활사업 참여자임(취업성공패키지 등 타 자활프로그램 참여 후 취업에 실패한 자, 기타 자활경로 재설정이 필요한 자)



자료 : 보건복지부(2018)

【그림 II-1-1】 자활사례관리 · Gateway 업무흐름도

표 II-1-1 자활사례관리자 및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 센터수 | 자활사례관리자 | Gateway 전담관리자 |
|----|-----|---------|---------------|
| 서울 | 30  | 10      | 16            |
| 부산 | 18  | 10      | 10            |
| 대구 | 9   | 3       | 5             |
| 인천 | 11  | 5       | 8             |
| 광주 | 9   | 8       | 8             |
| 대전 | 5   | 4       | 4             |
| 울산 | 5   | 0       | 1             |
| 경기 | 33  | 11      | 17            |
| 강원 | 17  | 3       | 7             |
| 충북 | 12  | 0       | 0             |
| 충남 | 14  | 1       | 0             |
| 전북 | 17  | 7       | 4             |
| 전남 | 23  | 3       | 1             |
| 경북 | 20  | 5       | 7             |
| 경남 | 20  | 6       | 4             |
| 제주 | 2   | 1       | 2             |
| 전체 | 245 | 77      | 94            |

주 : 보건복지부(2018). 자활사업 안내

- 지역자활센터 내 자활사업 참여자 및 희망키움통장 대상자의 사례관리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센터 실정에 맞게 사례관리팀 설치
- 전국의 자활센터 245개소 가운데 자활사례관리자는 77명, Gateway 전담관리자는 94명이 배치되어 있음

- 대부분의 시도에 자활사례관리자 보다 Gateway 전담관리자가 더 많이 배치된 가운데 중복은 자활사례관리자 및 Gateway 전담관리자가 전혀 배치되지 않음

### 3) 자활근로사업

#### 가. 기본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둠
-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정부재정사업의 자활사업 연계활성화 및 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 나. 자활근로사업 참여과정

-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며 이때 자활고용팀은 조건부수급자로 보장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역량평가 및 조건부과 내용을 결정함
  - 자활역량평가는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및 학력, 구직욕구, 가구여건, 재량 점수를 토대로 측정함.
-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배치 기준

- 평가 결과 집중취업지원 대상인 사람(70점 이상인 사람)는 고용센터에 의뢰
- 평가 결과 집중취업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70점 미만인 사람)는 자활근로, 자활기업 취업, 지역봉사, 생업자금 등 복지부(시·군·구) 자활사업에 배치

표 II-1-2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 예시

| 자활사업종류        |                  | 실시기관구분        | 기준  | 판정대상자                                  |                           |
|---------------|------------------|---------------|---|--|---------------------------|
| 고용노동부 자활사업    |                  | 고용센터          | 근로능력과 욕구 높음<br>노동시장 취업가능한자                            | 집중취업대상자<br>(70점이상)                     |                           |
| 보건복지부<br>자활사업 | 자<br>활<br>근<br>로 | 시장진입형         | 지역자활센터<br>민간위탁기관                                      | 자활근로프로그램 참여욕구 높은자<br>일용임시직으로 직업경험이 있는자 | 근로능력강화<br>대상자<br>(45~69점) |
|               |                  | 인턴도우미형        |   |  |                           |
|               |                  | 사회서비스형        |   |  |                           |
|               | 근로유지형            | 시군구지역자<br>활센터 |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 가능한자<br>간경양육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만 참여<br>가능한자 | 근로의욕증진대<br>상자(45점 미<br>만)              |                           |

주 : 보건복지부(2018)

-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자활역량이 높은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의 자활사업으로 유입되고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참여자들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에 유입되는 과정을 거칩.
- 여기에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역량이 낮은 여성들이 자활근로 다수 유입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 자활근로자 및 자활급여

- 자활근로 참여대상은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자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압류의 금지)를 적용함
  - 자활급여는 사업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가운데 급여단가와 실비를 합한 1일 지급액은 27,110원~44,210원으로 나타남
  - 시장진입형과 복지자활도우미 인턴형의 표준소득월액은 1,011,660원, 사회복지시설도우미와 사회서비스형은 각각 907,140원임
  - 근로유지형의 경우 1일 5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표준소득월액은 619,060원이며 급여단가도 23,810원으로 타 유형과 다소 차이가 있음

표 II-1-3 자활급여

(단위: 원)

| 구분         | 시장진입형/<br>기술·자격자  | 인턴·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br>기술·자격자 | 근로<br>유지형      |
|------------|-------------------|-----------------|----------------|-------------------|----------------|
|            |                   | 복지·자활<br>도우미인턴형 | 사회복지<br>시설 도우미 |                   |                |
| 지급액계       | 42,210/<br>44,210 | 42,210          | 38,190         | 38,190/<br>40,190 | 27,110         |
| 급여단가       | 38,910/<br>40,910 | 38,910          | 34,890         | 34,890/<br>36,890 | 23,810         |
| 실비         | 3,300             | 3,300           | 3,300          | 3,300             | 3,300          |
| 표준소득<br>월액 | 1,011,660         | 1,011,660       | 907,140        | 907,140           | 619,060        |
| 비고         | 1일 8시간, 주5일       |                 |                |                   | 1일 5시간,<br>주5일 |

주 : 보건복지부(2018)

## 라. 자활근로유형

-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으로 구분
  - 근로유지형은 자활근로사업의 25% 미만으로 운영하며, 업그레이드형인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는 전체 자활근로의 75% 이상으로 유지

| 구분                         | 사업비 지출한도  | 사업규모<br>(전체자활근로 참여인원의) | 시·군·구 직접시행,<br>민간위탁 |
|----------------------------|-----------|------------------------|---------------------|
| ① 근로유지형                    | 5%이하      | 25%미만                  |                     |
| 업<br>그<br>레<br>이<br>드<br>형 | ② 사회서비스형  | 20%이하                  |                     |
|                            | ③ 인턴·도우미형 | 0-10% 이하               |                     |
|                            | ④ 시장진입형   | 30%이하                  |                     |
|                            |           | 75%미만                  |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그림 II-1-2】 자활근로유형

###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 참여자의 근로능력정도에 따라 유형화하여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함.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역환경 정비, 공공시설물 관리 보조 등 노동 강도가 약하나 지역사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추진함
- 참여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로 대상자 선정시, 연령 및 건강, 학력 등을 감안하여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 참여가 필요한 자, 간병·양육·보호 등 가구여건상 관내 사업참여가 필요한자, 자활역량평가 결과가 근로의욕증진대상자를 감안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사업비(인건비+사업비)의 10%이상 발생하여야 함
- 공익성이 있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분야의 사업을 추진하되, 향후 시장진입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진. 수익금 창출을 지향하며 매출액이 총사업비의 30%이상 발생 시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유도함
-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의 추진기간은 사업단구성으로부터 3년까지 허용되며 기간 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전환하거나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함
- 매출액 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단 폐지가 원칙이나 시군구와 협의 하에 1년간 운영 연장 가능
-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참여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업종은 매출액 기준 10%를 적용하지 않으나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90:10으로 설정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투입예산의 30% 이상 발생하는 사업
- 신규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하되, 시군구청장이 사업의 특성, 수익창출효과를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시장진입형 신규사업단 설치 가능. 시장진입형으로 신규사업단을 구성한 경우 사업실시 6월 후 총투입예산 대비 매출액을 확인하여 요건 미충족시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
- 신규설치 시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하는 사업단에 대한 고가장비 구입비용 추가지원
- 사업단구성으로부터 3년까지 허용하며 기간 내 자활기업으로 창업하여야 함. 사업단의 일부가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한 경우 자활기업 창업일로부터 사업

추진기간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봄

○ 인턴·도우미형 자활근로

-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 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
- 참여대상자는 인턴형과 사회복지시설도우미의 경우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복지도우미와 자활도우미의 경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별제자임
  - 인턴형 : 단순노무형태를 지양하고, 수급자의 자활유도가 용이한 기술(전기, 용접, 이미용, 요리, 정비, 운전, 제과제빵) 습득이 가능한 업체 및 인건비 지원 후 인턴형 자활근로 참여자 채용을 확약한 업체에서 근로
  - 복지도우미 : 시도/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보조·지원. 업무내용은 근로능력자 관리지원, 시군구 직접수행 자활근로사업장 관리, 수급자 가구 방문지원, 안내문·후원금품 등 전달, 사업 홍보, 대장 정리 등
  - 자활도우미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자활사업 참여자를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 인력으로 활용. 업무내용은 사업장관리·참여결과 정리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사업담당자 업무 보조
  -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인력으로 자활사업참여자를 활용. 기관이 전일 근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와 가구여건 등으로 참여시간에 제약을 받는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시간제 참여 적극 활용

○ 시간제 자활근로

- 돌봄, 간병, 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으로 1일 4시간 근무원칙
- 참여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이하 빈곤층 중 시간제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해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자의 개인, 가구 여건을 고려하여 시간제 자활근로 참여자로 배치한 자

#### 4) 추진체계

##### 가. 지역자활센터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 1개소씩 설치를 목표로 227개 시군구에 245개소 설치되어있음
  -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도도 31개 시군구에 33개소
  - 전국의 자활센터 설치율은 109.2%로 설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과 제주도가 200.0%이며 가장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경북으로 87.0%임
  - 충북은 청주시에 2개소를 포함하여 109.1%의 설치율을 보임
-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의욕 고취 교육, 자활기업 설립·운영 등을 지원함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 고취 및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전문교육은 광역자활센터 및 자활연수원과 연계
  -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 창업을 통해 자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원을 하고 창업 후에도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완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모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업을 설립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 장애인, 산모·신생아, 노인돌봄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서비스사업 위탁 수행

- 수급자나 차상위자의 자활사업 참여나 취업·창업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가구에 대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 통장 사례관리 : 희망키움통장 I, 희망키움통장 II, 내일키움통장 등 복지부 시행 근로빈곤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교육 지원 등

표 II-1-4 지역자활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 개소, %)

| 구분 | 시군구 | 설치  | 설치율   |
|----|-----|-----|-------|
| 전국 | 227 | 245 | 109.2 |
| 서울 | 25  | 30  | 120.0 |
| 부산 | 16  | 18  | 112.5 |
| 대구 | 8   | 9   | 112.5 |
| 인천 | 10  | 11  | 110.0 |
| 광주 | 5   | 9   | 180.0 |
| 대전 | 5   | 5   | 100.0 |
| 울산 | 5   | 5   | 100.0 |
| 세종 | 1   | 2   | 200.0 |
| 경기 | 31  | 33  | 106.5 |
| 강원 | 18  | 17  | 94.4  |
| 충북 | 11  | 12  | 109.1 |
| 충남 | 15  | 14  | 93.3  |
| 전북 | 14  | 17  | 121.4 |
| 전남 | 22  | 23  | 104.5 |
| 경북 | 23  | 20  | 87.0  |
| 경남 | 18  | 20  | 111.1 |
| 제주 | 2   | 4   | 200.0 |

주 : 보건복지부(2018)

#### 나. 광역자활센터

-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활지원체계를 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를 목적으로 함
  - 광역단위의 공동사업 추진, 자활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지역 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추진
  - 다양한 자활정보 제공 및 전문적·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창업·취업능력

을 배양하여 센터별 구체적인 자활성공사례 배출

- 중앙-광역-지역으로 이루어지는 효율적인 자활지원 인프라를 통한 자활사업의 내실 및 자활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체계 형성
- 주요사업은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자활센터를 지원함

- 시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자활기업의 설립 과정에서 경영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전문 인력을 통한 컨설팅 지원
- 지역 내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성·연계를 통해 경영진단 및 자문 등 지원
- 시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지원 지원 및 알선
- 저소득층 개인 창업지원,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취업 지원
- 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및 실직 빈곤층 중심의 DB 등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성
- 지역 중소기업·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과의 일자리 연계
-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자활사업 실무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
- 자활사업 참여자 취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 전문 창업지원 인력 육성 등 전문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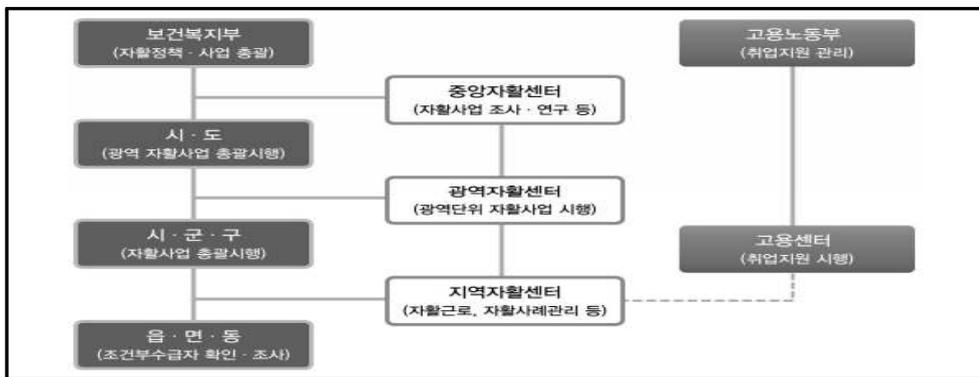
-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 시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

**다. 중앙자활센터**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평가, 민간자원 연계 등의 기능 수행 및 자활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지원업무를 전담하여 자활사업지원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주요사업으로는 전국 단위의 지원, 평가, 네트워크 운영 등을 수행함
  -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사업

-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지도 및 평가
- 자활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전국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사업 컨설팅 및 광역단위 자활기업 관리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주 : 보건복지부(2018)

【그림 II-1-3】 자활사업 추진체계

## 2. 자활사업 연구동향

- 자활사업에 관한 연구는 4가지 경향으로 나타남. 첫째, 자활사업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둘째, 자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셋째, 연구방법론상 자활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넷째, 미미하나 자활사업에 대해 성인지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임
- 과거의 연구를 현재의 시각으로 검토할 때 제도의 진보에 따라 일부 연구의 결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으나 연구경향 파악을 위해 간략하게 각 연구의 내용을 살펴봄

## 1) 자활사업의 제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주로 제도가 실시되는 초기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근로연계복지 제도로서의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인 것으로, 개별 연구들이 제안한 내용들은 현재 정책화된 부분이 다수임
- 문진영(2001)은 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간 연계프로그램의 효율적 구축방안은 생산적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주제라고 제안하면서 소득공제제도의 도입, 훈련지시와 취업지시의 적용 그리고 사례관리기법의 도입은 자활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함
- 임동진(2001)은 자활사업 취업대상자에게 자활사업 개별프로그램이 적합하게 적용되기 위해 일부 개편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입문상담 강화, 적극적 취업유도, 자활인턴제 활성화, 민간단체 참여유도, 구체적 사업설계와 유연한 운영, 장기적 관점에서의 운영기준과 계획수립, 취업 후 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방하남과 황덕순(2002)은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노동과 복지를 연계하는 근로연계적인 소득보장제도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실천대안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유인적인 소득공제제도의 도입방향과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서의 고용보험제도와 연계방안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안함
  -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공고용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며, 근로연계복지에서 추구하는 취업을 통한 소득창출과 빈곤탈출도 적정소득 보장이 가능한 일자리의 사회적 보장이 전제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봄. 이러한 제안은 임동진(2001)의 제안과 유사함
- 신명호(2007)는 서구의 근로연계복지제도와 자활사업 비교를 통해 근로연계복지제도로서 자활사업 특성을 분석함
  - 서구의 근로연계복지제도는 프로그램이 취약계층의 연령,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이 중 한 두 프로그램 대상자 그룹에만 근로 연계복지제도가 적용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단일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수급자들 가운데 심사를 통해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제시함

- 제도의 전략 면에서 근로연계복지제도의 전략을 ‘노동시장에의 조속한 진입’과 ‘인적자원개발’로 구분하였을 때, 자활사업은 두 전략 모두 용이하지 않다고 분석함
- 우준희(2010)는 근로연계복지로서 한국 자활지원사업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며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중심의 자활지원 협력네트워크 모델을 제안함
- 자활지원사업의 한계를 대상, 프로그램, 전달체계 세 가지 측면에서 목표와 제반인프라가 괴리되어 노동과 복지의 통합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대상자 측면에서 대상자에 대한 조사업무와 근로능력 판정은 시군구에서 행정관리는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된다고 지적
- 프로그램 개발 및 배치 측면에서 참여율이 낮고, 일자리창출-취업연계-직업능력개발-사회서비스 지원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프로그램과 일자리의 지역적 격차가 심함
- 전달체계 측면에서 관리와 운영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개인별 특성과 변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 2) 자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 후 해당 제도의 성과와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제도를 보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자활에 긍정적인 기여 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
- 긍정적인 부분은 자활사업의 참여자들이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을 통한 탈수급

효과는 낮지만, 자활사업이 수급자가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이 근로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근로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고 봄(지규옥, 2015). 따라서 자활사업의 심리·사회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함

- 임태영과 주은수(2011)는 지역자활센터와 파견기관과의 관계가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함. 이러한 결과는 참여자 개인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기관과의 관계가 자활효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이상은과 전세나(2012)는 자활사업의 사회적 배제 감소효과를 측정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참여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자활사업이 빈곤계층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함
  - 이은정(2014)은 정서적·사회적 자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정서적 자활 영향요인으로 요보호가구원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를 사회적 자활 영향요인으로 삶의 만족도, 조직유형,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건강서비스 만족도라고 밝히며, 심리사회적 다양한 근로 장벽을 지닌 자활참여자의 특성에 적합한 통합사례관리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제언을 함
- 반면 자활사업의 경제적 자활·자립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연구들은 자활사업의 낮은 성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자활사업이 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요소 및 자립전망을 제고하는 데 성과가 미흡하며 수급권 탈피율 또한 저조하다고 주장함
- 임진섭(2013)은 젊은 층의 자활성공가능성은 높은 편이지만 중고령층의 자활 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중고령층에 대한 체계화된 자활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뿐만 아니라 박정호(2010)는 한국복지패널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학력은 심리적 안정의 도움과 생계유지의 도움에 부정적 영향을 보였으며, 고학력일수

록 자활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활사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크다고 제시함

- 자활사업 참여자 중 저소득 참여자, 여성참여자, 요보호아동가구 참여자, 고학력자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활성고가 낮았다고 밝히면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을 제시함

### 3) 자활사업 경험에 관한 연구

- 자활사업에 관한 질적 연구는 최근의 연구경향으로 등장하였으며, 자활사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복합적으로 제시함
- 김소형과 김경호(2018)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연령이 낮아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20대 빈곤청년의 자활참여 경험 연구에서 자활근로참여 이후 긍정적으로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졌으며, 자활센터를 통한 빈곤 극복의 출구와 자기극복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고 제시함
- 김자옥과 유태균(2018)은 자활사업은 비자발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강제된 근로활동으로 인식하여 소극적이었으며 현재 닥친 어려움을 헤쳐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자리라는 인식과 함께 긍정적으로는 자신의 근로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이고 자립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라는 본질을 도출함.
  - 이에 따라 참여자를 주체로 세울 수 있는 디딤돌로서 사회적 경제기관과의 협력적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 조준용(2013)은 자활제도 참여자의 자활경험과 전망에 대한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자활을 통해 스스로 자활을 재정의하고 자활제도를 활용한다고 분석함
  - 자활센터에서의 근로를 통해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교육훈련,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 일반노동시장에의 취업을 경험하고 있으며,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자녀교육에 헌신하고 자신이 정한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언급함

### 3. 자활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 자활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 연구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강남식, 신은주, 성정현, 2002; 김현옥, 2016; 백학영, 고미선, 2007), 성별에 따른 차이(송인한, 박장호, 김리자, 2012)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며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연구는 엄명용 외(2014)가 진행한 1편의 연구가 있음.
- 강남식 외(2002)는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 수급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다고 지적함
- 백학영 외(2007)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분석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이혼이나 사별 등 혼인상태에 중요한 변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주생계부양자의 역할과 동시에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면하게 됨. 여성가장들은 자활사업을 자활을 위한 발판으로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며 자활의 성공모델이 되고자 노력함
  - 이들에게 자활의 성공은 일차적으로 공공부조를 수급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자활경험을 자활계획으로 연결하는 적극적인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긍정적인 참여를 경험하지 못한 연구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이 아닌 다른 곳에 자신의 돌파구를 찾거나 뚜렷한 계획 없이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함
  - 자활참여자들이 자활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데 자활사업은 한계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들은 강한 자활의지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음
- 김현옥(2016)은 빈곤여성의 자활근로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은 자활근로사업은 직장이자 비슷한 사람들과의 공동체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일반 노동시장과 구분되어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한다고 하며 자활근로 참

여경험이 향후 노동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참여사업 경험과 취업분야가 연속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 송인한 외(2012)는 자활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부채가 없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우울지수가 낮을수록, 실무자지지가 높을수록,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자활의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여 성별차이를 고려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함
- 이미영(2013)은 자활참여자의 계속참여의향에 관한 성별차이 분석에서 남성은 경제변수, 자활사업만족도가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은 대인관계변수, 자활사업만족도가 영향을 미쳐 성별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나 성별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 백선희(2000)는 성주류화관점에서 본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분석과 자활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에서 실업대책이 표면적으로는 성중립적이지만 성통합적 시각이 결여됨으로 실업의 개념 및 대책에서 여성을 비주류화 하고 있다고 지적함
  - 대안으로는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를 산출,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자활사업을 개발, 여성을 위한 적극적인 취업알선방법을 개발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 여성적합 훈련 직종을 개발하고 참여기회 확대 및 자활정책의 평가체계와 평가결과를 반영하는 피드백구조를 마련할 때 성통합적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함
- 엄명용 외(2014)는 자활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패널데이터, 서베이 데이터 및 FGI를 통해 분석을 시도하고 성별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자활사업 제도개선방안을 8가지 제시함
  - 자활사업 영역에서의 성인지적 통계인프라 구축 미활용,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위원회의 성비 고려, 다차원적인 자활사업 종사자 및 참여자 대상의 성인지 교육필요,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 사업 내 사전단계 참여기간 연장사유 재고, 성별특성을 고려한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필요, 성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과정평가 고려, 성과평가 지표 내 성별특성을 반영한 추가지표 고려, 성별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 우수사례 제시

- 노채영과 전진희(2014)의 광주광역시의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의 성별영향분석 평가연구는 취약계층 일자리 전문가의 인식을 포함하여 일자리 정책의 성인지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나 자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이 자활사업에 대한 성인지적접근은 백선희(2000)의 연구를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으나 이후 성별 간 차이를 분석하는 정도에 그침. 다시 엄명용 외(2014)의 연구를 통해 시도되었으나 지역을 단위로 분석한 연구를 통해서도 그 명맥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임

#### 4. 성별영향평가의 법적근거와 중요성

- 성별영향평가는 주로 법·제도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시행 2012. 3. 16)되면서 부터임. 2016년에는 동법이 개정되면서 제10조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라는 개념이 추가되었음. 최근 일부개정이 한차례 더 진행되면서(2018. 3. 27.) ‘성별영향평가’ 법으로 바뀌었음.
- 따라서 현행 「성별영향평가법」에는 ‘특정성별영향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가 각각 별도 조항으로 존재하고 있음.
-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재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함)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① 시행중인 법령, ②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③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 특히 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에서는 ① 시행중인 조례·규칙 ②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③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성별영향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의 집행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남성과 여성이 모두 공히 정책의 수혜자가 되도록 함에 있음.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를 좀 더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의 체계와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법적 남녀평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은 다양한데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중간법으로 하고 있음.
- 「헌법」 전문에서는 기본적인 평등원칙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0조에서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15조에서 성별영향평가를 명시하고 있음.
- 즉, 성별영향평가는 「헌법」을 최상위법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을 중간법으로 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남녀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모든 정책이 실질적으로 남녀평등하게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임.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 차별성을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2015년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지수에서 전체 61개 국가 중 한국은 25위로 전년보다 순위가 1단계 상승하였음<sup>2)</sup>. 이러한 지표상승 결과는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평가항목 중 경제성과 항목에 있어서 여성 인력활용증대가 국가경쟁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일반적임(김양희, 2007). IMD평가 항목 중 ‘차별 없이 기회 균등이 부여되는 정도’가 노동시장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회의 평등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는데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성별영향평가가 활용되고 있음.
-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통합영향평가 등 각종 정책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평가 및 분석의 근거로 성(gender)의 고려된 적은 그다지 많지 않음(김재인 외, 2008).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 정책결정의 발언이나 승진, 소득 등에서 사회·문화적 여건이 여성의 지위를 주변화 시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임(이은경, 2009).
- 그러나 여성의 사회·문화적 주변화는 여성이 경제활동과 제반 정책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으로 여성의 빈곤화 및 사회양극화 확대에 일조하게 됨. 따라서 취약계층 일자리분야에서도 여성참여율 제고와 자립지원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이에 따라 취약계층 일자리 부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근거는 충분함.
- 즉, 여성의 요구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여성은 물론 남성과 사회통합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수요자로서 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성별영향평가제도는 더욱 중요함.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국가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필수적인 도구라

---

2) 우리나라 IMD 국가경쟁력 지표 추이를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가장 낮은 41위를 보였으며 2011~2013년 가장 높은 22위를 기록하였음.

할 수 있음(이은경, 2009).

## 5.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표

### 1) 성별영향평가의 범위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정책은 먼저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별에 따라 수혜도 편차가 큰 것이라고 예상되는 정책, 양성평등 관련 지표에 영향을 주는 정책, 그리고 기타 기관장이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한 정책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 ※대상정책 선정기준(예시)

- 정책개선에 따른 정책수혜 대상의 범위가 넓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인가?
- 일반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하거나 성별 격차를 체감하는 정책이면서 정책개선안 도출이 예상되는 사업인가?
- 정책개선의 파급효과가 1 ~ 2년 내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향후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정책인가(예:과학기술 R&D 과제 관련 정책개선안)
- 지역 성평등 지수가 낮은 분야 관련 정책이면서 정책개선안 도출이 예상되는가?
- 국정과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관련 정책이면서 정책개선안 도출이 예상되는가?
- 국회, 지방의회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으로서 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이 필요한 정책인가?(예: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 또한 여성가족부는 평가 대상 정책의 규모, 범위, 유형에 제한은 없으며, 평가 내용의 질적 수준과 평가 시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대상 정책으로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예시하였음. 예를 들자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정책, 장기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 정책대상자(수혜자)간의 형평성이 사업성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책, 원인이 명확히 분석되지 않았으나 지표상에 성차가 나타나는 정책, 새로 시행된 정책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2) 성별영향평가 항목 및 점검 point

○ 본 연구에서 자활근로사업의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연구의 틀로 고려하였던 지표는 아래의 <표 II-3-1>에서 제시한 성별영향평가 항목과 점검 Point임.

표 II-3-1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

| 분석평가항목        |  | 점검point   |
|---------------|--|---|
| 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 1. 사업의 성별 요구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li> <li>-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li> <li>-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성별로 다른 요구도가 있는지 점검</li> </ul> |
|               | 2. 사업의 성별 형평성  | ②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li> <li>-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li> </ul>                               |
|               |  | ③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li> </ul>  |
| 3. 법령         | ④ 법령(지침 포함)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br/>예시)위원회 여성비율 40%이상 반영 등</li> </ul> |   |

| 분석평가항목                        |       |                     | 점검point  |
|-------------------------------|-------|---------------------|--|
| Ⅱ. 성 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정책 개선 및 환류) | 4. 예산 | ⑤ 예산 반영 계획          |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                               | 5. 사업 | ⑥ 사업내용, 수행방식 등 운영계획 |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 항목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 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br>예시)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반영 등 |

출처 : 2018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 Ⅲ. 자활근로사업 관련 현황 및 자료분석

---

1. 자활근로사업 관련 성인지적 통계 현황
2. 조례 및 지침 분석
3. 사업내용 분석
4.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실무자 FGI 분석

CBWF



## 1. 자활근로사업 관련 성인지적 통계 현황

### 1) 자활관련 인구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국 1,587,126명이며 경기도 265,654명, 서울 264,655명, 부산 145,414명 순으로 많고, 세종이 4,402명으로 가장 적음
  - 유형별로는 일반수급자 1,256,575명, 조건부수급자 198,771명, 시설수급자 90,597명의 순으로 일반수급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충북의 수급자는 51,904명이며, 수급자중 일반수급자가 39,413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수급자가 5,458명, 조건부수급자는 5,433명의 순으로 나타남
- 차상위계층은 총970,207명으로 경기도 178,232명, 서울 166,274명, 부산 70,994명의 순으로 많으며 충북은 30,104명임.

표 Ⅲ-1-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단위 : 명)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        |        |         |     | 차상위<br>계층 |
|----|-------------|-----------|--------|--------|---------|-----|-----------|
|    | 계           |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 특례수급자  | 조건부     | 기타  |           |
| 전국 | 1,587,126   | 1,256,575 | 90,597 | 41,001 | 198,771 | 182 | 970,207   |
| 서울 | 264,655     | 203,825   | 11,445 | 5,980  | 43,379  | 4   | 166,274   |
| 부산 | 145,414     | 116,260   | 5,271  | 3,917  | 19,966  | 6   | 70,994    |
| 대구 | 102,305     | 80,283    | 5,375  | 2,222  | 14,425  | 73  | 55,676    |
| 인천 | 99,991      | 79,855    | 4,789  | 2,660  | 12,687  | 6   | 55,862    |
| 광주 | 65,037      | 47,180    | 2,895  | 1,111  | 13,851  | 15  | 37,632    |
| 대전 | 52,169      | 39,977    | 3,034  | 566    | 8,592   | 11  | 31,906    |
| 울산 | 19,209      | 15,708    | 1,055  | 481    | 1,965   | 2   | 13,948    |
| 세종 | 4,402       | 3,263     | 500    | 118    | 521     | -   | 3,000     |
| 경기 | 265,654     | 215,635   | 15,486 | 7,293  | 27,240  | 34  | 178,232   |
| 강원 | 60,844      | 49,604    | 4,181  | 1,338  | 5,721   | -   | 37,184    |
| 충북 | 51,904      | 39,413    | 5,458  | 1,600  | 5,433   | 3   | 30,104    |
| 충남 | 60,244      | 47,238    | 4,882  | 2,376  | 5,748   | 8   | 37,623    |
| 전북 | 93,815      | 72,502    | 5,551  | 2,626  | 13,136  | 5   | 58,806    |
| 전남 | 78,142      | 65,695    | 6,003  | 1,612  | 4,832   | 1   | 58,700    |
| 경북 | 99,270      | 79,230    | 6,906  | 2,784  | 10,350  | 11  | 59,059    |
| 경남 | 102,214     | 83,545    | 5,920  | 3,823  | 8,926   | -   | 61,611    |
| 제주 | 21,701      | 17,362    | 1,846  | 494    | 1,999   | 3   | 13,596    |

주 : 사회보장통계 2018.11.15. 추출 재가공(2018.9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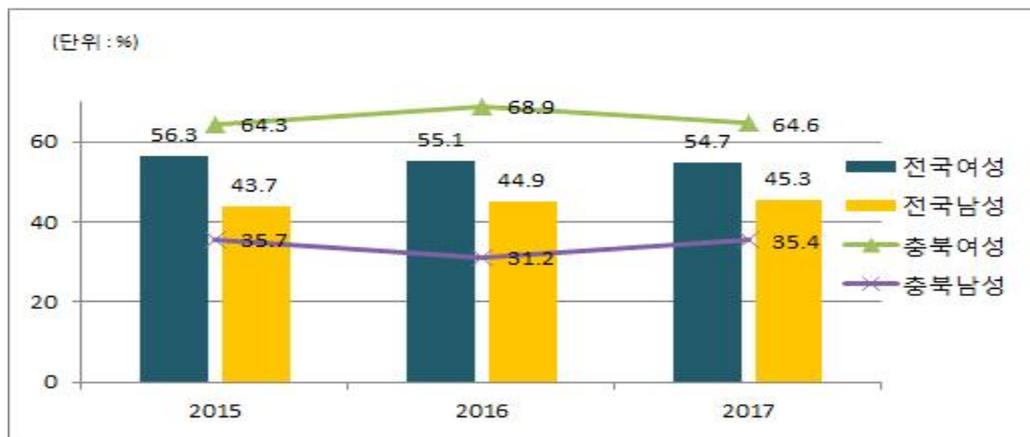
-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의 최근 3년간 변화 추이를 전국과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충북 여성의 자활사업 참여자 비율은 전국 수준에 비해 9.9%p 더 높게 나타났다으며 남성의 경우는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음.
- 성별에 따른 변화추이에서 여성의 참여율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Ⅲ-1-2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변동추이

(단위 : 명, %)

|    |   | 자활사업 | 2015    | 2016    | 2017    |
|----|---|------|---------|---------|---------|
| 전국 | 여 | N    | 707,471 | 864,879 | 848,210 |
|    |   | %    | 56.3    | 55.1    | 54.7    |
|    | 남 | N    | 548,664 | 704,687 | 703,497 |
|    |   | %    | 43.7    | 44.9    | 45.3    |
| 충북 | 여 | N    | 897     | 1,181   | 944     |
|    |   | %    | 64.3    | 68.9    | 64.6    |
|    | 남 | N    | 499     | 532     | 518     |
|    |   | %    | 35.7    | 31.2    | 35.4    |

주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각 년도 재편집. 각 년도의 기준은 전년도 12월임. 복지정책과 자료



【그림 Ⅲ-1-1】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변동추이

- 수급지위별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수 역시 2015년 대비 2017년에 7.5%p 증가 하였음. 이는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자활사업 운영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임.

표 Ⅲ-1-3 수급지위별 자활사업대상자수

(단위: 명, %)

| 구분   | 자활사업 대상자  | 근로능력이 없는자 | 근로능력이 있는자      |        |        |         | 차상위    |
|------|-----------|-----------|----------------|--------|--------|---------|--------|
|      |           |           | 조건부과 제외자 및 유예자 | 조건부수급자 | 자활특례   | 기타      |        |
| 2015 | 1,256,139 | 921,313   | 119,955        | 20,967 | 19,675 | 155,476 | 18,753 |
|      | 100.0     | 73.3      | 9.5            | 1.7    | 1.6    | 12.4    | 1.5    |
| 2016 | 1,569,566 | 1,030,792 | 137,472        | 23,239 | 13,821 | 348,631 | 15,611 |
|      | 100.0     | 65.7      | 8.8            | 1.5    | 0.9    | 22.2    | 1.0    |
| 2017 | 1,551,707 | 1,022,001 | 133,418        | 22,476 | 9,779  | 354,948 | 12,085 |
|      | 100.0     | 65.9      | 8.6            | 1.4    | 0.6    | 22.9    | 0.8    |

주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각 년도 재편집. 각 년도의 기준은 전년도 12월임

- 프로그램별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 2016년 말 자활사업 참여자는 155,080명으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인원은 39,150명(시장진입형 7784명, 사회서비스형 19771명, 인턴도우미형 3552명, 자활근로 8043명), 창업지원 4,662명,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9,649명 등임

표 Ⅲ-1-4 자활사업 프로그램별 참여자 수(16년 말)

(단위 : 명/실인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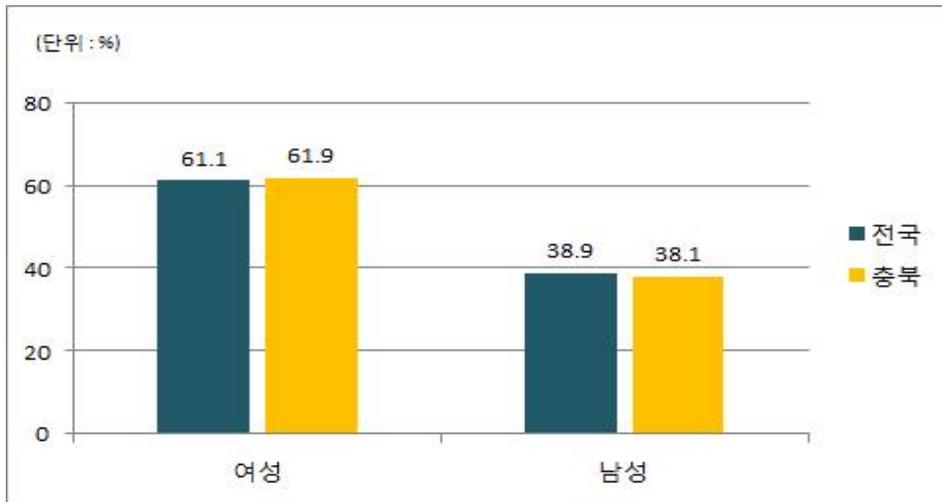
| 자활사업계 (A+B) | 소계 (A)  | 자활근로   |        |         |       | 창업지원  | 희망키움통장 I | 희망키움통장 II | 취업지원 [고용부(B)] |         |        |
|-------------|---------|--------|--------|---------|-------|-------|----------|-----------|---------------|---------|--------|
|             |         | 업그레이드형 |        |         | 근로유지형 |       |          |           | 희망리본          | 취업성공패키지 |        |
|             |         | 시장진입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       |          |           |               |         |        |
| 155,080     | 125,431 | 7,784  | 19,771 | 3,552   | 8,043 | 4,662 | -        | 37,913    | 43,706        | -       | 29,649 |

주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2018.11.15. 추출

## 2) 전국 자활근로사업 현황

○ 전국 자활근로사업 성별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수는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인큐베이팅을 포함한 인원으로 전체 20,439명이며, 여성 12,487명(61.1%), 남성 8,280명(38.9%)임. 가장 참여자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2,902명, 경기 2,833명의 순이며, 가장 참여자가 적은 지역은 세종 108명임
- 본 연구의 대상지인 충북은 717명으로 여성 61.9%, 남성 38.1%로 전국 평균치와 유사함. 성별 참여자 비중은 모든 지역에서 여성의 참여비중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남. 여성의 참여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 77.8%, 광주 73.6%, 울산 69.3%의 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 50.4%로 나타남.
- 여성참여자 비중이 가장 높은 대전과 가장 낮은 서울의 격차는 27.4%p임. 남성 참여자 비중은 여성과 정반대로 서울이 가장 높고 대전이 가장 낮으며 비중격차는 동일하게 27.4%p임



【그림 III-1-2】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비율

표 III-1-5 전국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단위: 명,%)

| 구분 | 계      |       | 여성     |      | 남성    |      |
|----|--------|-------|--------|------|-------|------|
|    | N      | %     | N      | %    | N     | %    |
| 전국 | 20,439 | 100.0 | 12,487 | 61.1 | 7,952 | 38.9 |
| 서울 | 2,902  | 100.0 | 1,463  | 50.4 | 1,439 | 49.6 |
| 부산 | 1,773  | 100.0 | 1,157  | 65.3 | 616   | 34.7 |
| 대구 | 913    | 100.0 | 514    | 56.3 | 399   | 43.7 |
| 인천 | 1,442  | 100.0 | 836    | 58.0 | 606   | 42.0 |
| 광주 | 1,113  | 100.0 | 819    | 73.6 | 294   | 26.4 |
| 대전 | 185    | 100.0 | 144    | 77.8 | 41    | 22.2 |
| 울산 | 192    | 100.0 | 133    | 69.3 | 59    | 30.7 |
| 세종 | 108    | 100.0 | 60     | 55.6 | 48    | 44.4 |
| 경기 | 2,833  | 100.0 | 1,688  | 59.6 | 1,145 | 40.4 |
| 강원 | 1,346  | 100.0 | 785    | 58.3 | 561   | 41.7 |
| 충북 | 717    | 100.0 | 444    | 61.9 | 273   | 38.1 |
| 충남 | 897    | 100.0 | 523    | 58.3 | 374   | 41.7 |
| 전북 | 1,501  | 100.0 | 1,004  | 66.9 | 497   | 33.1 |
| 전남 | 1,478  | 100.0 | 1,016  | 68.7 | 462   | 31.3 |
| 경북 | 1,326  | 100.0 | 847    | 63.9 | 479   | 36.1 |
| 경남 | 1,472  | 100.0 | 890    | 60.5 | 582   | 39.5 |
| 제주 | 241    | 100.0 | 164    | 68.0 | 77    | 32.0 |

주 : 중앙자활센터 내부자료. 2017.12 기준

○ 전국 자활근로사업 사업단별 참여자

- 사업단별 참여자는 사회서비스형 57.6%, 시장진입형 37.1%, 인턴도우미형 1.4%, 근로유지형 0.8%, 인큐베이팅 1.5%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이 가장 활성화되었음
- 사회서비스형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지역은 대구 70.3%,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54.9%로 15.4%p의 차이가 있음
- 성별로 여성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유형은 사회서비스형 6,764명(여성의 54.5%)이며, 남성도 사회서비스형으로 5,016명(남성의 63.1%)명이 참여하고 있음. 반면 전체 참여자가 적은 편에 속하는 대전과 울산은 사회서비스형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지역으로 나타남
- 본 연구 대상지인 충북의 경우 사회서비스형이 67.5%, 시장진입형이 16.0%로 사회서비스형은 전국 평균 57.6%보다 더 높은 참여율을 보임

표 III-1-6 전국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단위: 명, %)

| 구분 | 계      | 사회서비스형 |       | 시장진입형 |       | 인턴도우미 |     | 근로유지 |     | 인큐베이팅 |     |
|----|--------|--------|-------|-------|-------|-------|-----|------|-----|-------|-----|
|    |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 전국 | 20,439 | 6,764  | 5,016 | 5,079 | 2,517 | 233   | 57  | 80   | 86  | 147   | 158 |
|    | 100.0  | 33.1   | 24.5  | 24.8  | 12.3  | 1.1   | 0.3 | 0.4  | 0.4 | 0.7   | 0.8 |
| 서울 | 2,902  | 865    | 924   | 511   | 427   | 31    | 18  | 22   | 17  | 34    | 53  |
|    | 100.0  | 29.8   | 31.8  | 17.6  | 14.7  | 1.1   | 0.6 | 0.8  | 0.6 | 1.2   | 1.8 |
| 부산 | 1,773  | 506    | 412   | 625   | 174   | 7     | 3   | -    | -   | 19    | 27  |
|    | 100.0  | 28.5   | 23.2  | 35.3  | 9.8   | 0.4   | 0.2 | -    | -   | 1.1   | 1.5 |
| 대구 | 913    | 338    | 304   | 171   | 92    | 2     | 1   | -    | -   | 3     | 2   |
|    | 100.0  | 37.0   | 33.3  | 18.7  | 10.1  | 0.2   | 0.1 | -    | -   | 0.3   | 0.2 |
| 인천 | 1,442  | 383    | 361   | 433   | 230   | 8     | 1   | -    | -   | 12    | 14  |
|    | 100.0  | 26.6   | 25.0  | 30.0  | 16.0  | 0.6   | 0.1 | -    | -   | 0.8   | 1.0 |
| 광주 | 1,113  | 506    | 168   | 299   | 100   | -     | -   | -    | -   | 14    | 26  |
|    | 100.0  | 45.5   | 15.1  | 26.9  | 9.0   | -     | -   | -    | -   | 1.3   | 2.3 |
| 대전 | 185    | -      | -     | 112   | 33    | 15    | -   | -    | 5   | 8     | 3   |
|    | 100.0  | -      | -     | 60.5  | 17.8  | 8.1   | -   | -    | 2.7 | 4.3   | 1.6 |
| 울산 | 192    | -      | -     | 125   | 52    | 4     | 1   | 4    | 6   | -     | -   |
|    | 100.0  | -      | -     | 65.1  | 27.1  | 2.1   | 0.5 | 2.1  | 3.1 | -     | -   |
| 세종 | 108    | 29     | 29    | 25    | 11    | 3     | 4   | 3    | 4   | -     | -   |
|    | 100.0  | 26.9   | 26.9  | 23.1  | 10.2  | 2.8   | 3.7 | 2.8  | 3.7 | -     | -   |
| 경기 | 2,833  | 837    | 720   | 782   | 379   | 18    | 8   | 27   | 35  | 24    | 13  |
|    | 100.0  | 29.5   | 25.4  | 27.6  | 13.4  | 0.6   | 0.3 | 1.0  | 1.2 | 0.8   | 0.5 |
| 강원 | 1,346  | 454    | 356   | 142   | 74    | 14    | 3   | -    | -   | -     | -   |
|    | 100.0  | 33.7   | 26.4  | 10.5  | 5.5   | 1.0   | 0.2 | -    | -   | -     | -   |
| 충북 | 717    | 288    | 196   | 142   | 74    | 14    | 3   | -    | -   | -     | -   |
|    | 100.0  | 40.2   | 27.3  | 19.8  | 10.3  | 2.0   | 0.4 | -    | -   | -     | -   |
| 충남 | 897    | 295    | 272   | 205   | 96    | 14    | 1   | 9    | 5   | -     | -   |
|    | 100.0  | 32.9   | 30.3  | 22.9  | 10.7  | 1.6   | 0.1 | 1.0  | 0.6 | -     | -   |
| 전북 | 1,501  | 522    | 277   | 429   | 204   | 43    | 8   | -    | -   | 10    | 8   |
|    | 100.0  | 34.8   | 18.5  | 28.6  | 13.6  | 2.9   | 0.5 | -    | -   | 0.7   | 0.5 |
| 전남 | 1,478  | 584    | 237   | 412   | 213   | 10    | 2   | 1    | 4   | 9     | 6   |
|    | 100.0  | 39.5   | 16.0  | 27.9  | 14.4  | 0.7   | 0.1 | 0.1  | 0.3 | 0.6   | 0.4 |
| 경북 | 1,326  | 551    | 323   | 269   | 151   | 16    | -   | -    | -   | 11    | 5   |
|    | 100.0  | 41.6   | 24.4  | 20.3  | 11.4  | 1.2   | -   | -    | -   | 0.8   | 0.4 |
| 경남 | 1,472  | 508    | 381   | 341   | 186   | 24    | 4   | 14   | 10  | 3     | 1   |
|    | 100.0  | 34.5   | 25.9  | 23.2  | 12.6  | 1.6   | 0.3 | 1.0  | 0.7 | 0.2   | 0.1 |
| 제주 | 241    | 98     | 56    | 56    | 21    | 10    | -   | -    | -   | -     | -   |
|    | 100.0  | 40.7   | 23.2  | 23.2  | 8.7   | 4.1   | -   | -    | -   | -     | -   |

주 : 중앙자활센터 내부자료. 2017.12 기준

○ 전국 자활근로사업 연평균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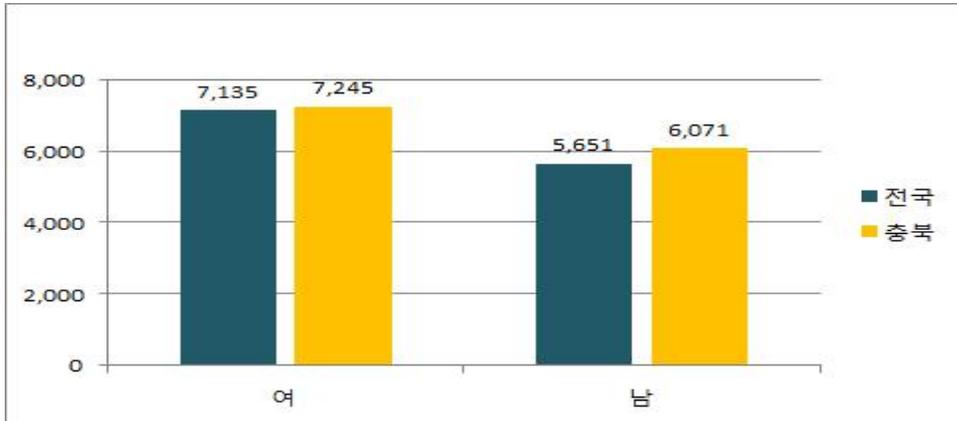
- 연평균지급액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은 여성 7,135,561원, 남성 5,651,578원으로 여성이 약 148만원 정도 더 높은 수준임
- 성별 연평균지급액 격차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1,989,685원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 약 567,576원임
- 여성 지급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8,447,338원,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 4,355,750원으로 약 510만원의 격차가 발생
- 남성 지급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7,177,072원,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 2,783,860원으로 약 430만원 정도 차이가 있음

표 Ⅲ-1-7 전국 자활근로사업 연평균 급여 현황

(단위: 원)

| 구분 | 여(A)      | 남(B)      | A-B       |
|----|-----------|-----------|-----------|
| 전국 | 7,135,561 | 5,651,578 | 1,483,983 |
| 서울 | 5,253,917 | 4,277,513 | 976,404   |
| 부산 | 7,300,395 | 4,706,825 | 2,593,570 |
| 대구 | 6,793,283 | 5,601,924 | 1,191,359 |
| 인천 | 7,864,361 | 6,182,474 | 1,681,887 |
| 광주 | 7,253,057 | 4,667,590 | 2,585,467 |
| 대전 | 4,355,750 | 2,783,860 | 1,571,890 |
| 울산 | 8,418,364 | 5,638,378 | 2,779,986 |
| 세종 | 7,677,699 | 6,609,461 | 1,068,238 |
| 경기 | 6,597,411 | 5,739,375 | 858,036   |
| 강원 | 6,950,757 | 6,383,181 | 567,576   |
| 충북 | 7,245,937 | 6,071,191 | 1,174,746 |
| 충남 | 7,477,297 | 6,321,953 | 1,155,344 |
| 전북 | 8,446,404 | 7,008,470 | 1,437,934 |
| 전남 | 8,447,338 | 7,177,072 | 1,270,266 |
| 경북 | 7,170,565 | 6,344,201 | 826,364   |
| 경남 | 7,719,593 | 6,220,625 | 1,498,968 |
| 제주 | 6,332,414 | 4,342,729 | 1,989,685 |

주 : 중앙자활센터 내부자료, 2017.12 기준



【그림 Ⅲ-1-3】 자활근로사업 연평균 급여 현황

### 3) 충북 자활근로사업 현황<sup>3)</sup>

- 충북 자활근로사업 성별 참여자: 2018년 현재 충북 자활참여자는 641명
  - 시군별로는 청주자활이 102명, 충주 75명, 제천 71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참여자가 적은 시군은 증평 24명, 괴산 30명, 단양 31명임
  - 성별로 여성 410명(64.0%), 남성 231명(36.0%)으로 여성참여자가 남성보다 179명 더 많은 가운데 시군별로 괴산은 여성참여자가 수 보다 남성 참여자수가 6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괴산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남성 참여자가 더 많은 것은 자활참여자 중 차상위계층 남성참여자가 많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음
  - 여성참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주 73.3%이며, 다음으로 제천 71.8%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괴산 40.0%로 지역 간 편차가 있음
  - 한편 2014년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된 이후에도 지역자활센터 명칭은 여전히 과거의 지명을 따르고 있는 상황임. 향후 센터명 개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3) 각 시군 자활센터 내부자료를 참고로 작성됨. 2)전국 자활현황에 사용된 중앙자활센터의 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있을 것으로 보임.

표 Ⅲ-1-8 충북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 성별

(단위 : 명, %)

| 구분 | 전체  |       | 여     |      | 남    |      |      |
|----|-----|-------|-------|------|------|------|------|
|    | N   | %     | N     | %    | N    | %    |      |
| 청주 | 청주  | 102   | 100.0 | 68   | 66.7 | 34   | 33.3 |
|    | 청원  | 63    | 100.0 | 44   | 69.8 | 19   | 30.2 |
| 충주 | 75  | 100.0 | 55    | 73.3 | 20   | 26.7 |      |
| 제천 | 71  | 100.0 | 51    | 71.8 | 20   | 28.2 |      |
| 보은 | 45  | 100.0 | 31    | 68.9 | 14   | 31.1 |      |
| 옥천 | 55  | 100.0 | 32    | 58.2 | 23   | 41.8 |      |
| 영동 | 44  | 100.0 | 27    | 61.4 | 17   | 38.6 |      |
| 진천 | 51  | 100.0 | 32    | 62.7 | 19   | 37.3 |      |
| 괴산 | 30  | 100.0 | 12    | 40.0 | 18   | 60.0 |      |
| 음성 | 50  | 100.0 | 29    | 58.0 | 21   | 42.0 |      |
| 단양 | 31  | 100.0 | 18    | 58.1 | 13   | 41.9 |      |
| 증평 | 24  | 100.0 | 11    | 45.8 | 13   | 54.2 |      |
| 전체 | 641 | 100.0 | 410   | 63.2 | 231  | 36.8 |      |

주. 2018.9.30. 기준

○ 충북 자활근로사업 연령대별 참여자

- 전체 참여자의 연령대는 50대가 218명(34.0%)으로 가장 많고 60대 201명(31.4%), 40대 109명(17.0%)의 순으로 4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자활사업은 중장년층 이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장년층이 전체의 80% 이상 참여하는 가운데 괴산의 경우 20대 참여자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20대 참여자가 전혀 없는 증평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비중임을 알 수 있음
- 연령에 따른 성별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50대와 60대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옥천, 진천, 괴산, 음성, 증평 지역의 남성 참여자가 여성 참여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9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단위: 명, %)

| 구분 | 계   |     | 20대 이하 |   | 20대 |    | 30대 |    | 40대 |    | 50대 |     | 60대 이상 |    |    |
|----|-----|-----|--------|---|-----|----|-----|----|-----|----|-----|-----|--------|----|----|
|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
| 청주 | 청주  | 68  | 34     | 0 | 0   | 1  | 0   | 8  | 0   | 21 | 3   | 26  | 19     | 12 | 12 |
|    | 청원  | 44  | 19     | 0 | 0   | 6  | 4   | 6  | 0   | 10 | 4   | 10  | 8      | 12 | 3  |
| 충주 | 55  | 20  | 0      | 0 | 2   | 1  | 5   | 1  | 15  | 2  | 18  | 8   | 15     | 8  |    |
| 제천 | 51  | 20  | 0      | 0 | 2   | 4  | 4   | 0  | 14  | 1  | 13  | 9   | 18     | 6  |    |
| 보은 | 31  | 14  | 0      | 0 | 3   | 0  | 5   | 2  | 2   | 0  | 3   | 4   | 18     | 8  |    |
| 옥천 | 32  | 23  | 0      | 0 | 4   | 2  | 2   | 1  | 9   | 1  | 9   | 13  | 8      | 6  |    |
| 영동 | 27  | 17  | 0      | 0 | 1   | 0  | 1   | 2  | 6   | 3  | 11  | 5   | 8      | 7  |    |
| 진천 | 32  | 19  | -      | - | 3   | 1  | 6   | -  | 4   | 1  | 6   | 7   | 13     | 10 |    |
| 괴산 | 12  | 18  | -      | - | 4   | 4  | 2   | 2  | 2   | 4  | 1   | 6   | 3      | 2  |    |
| 음성 | 29  | 21  | -      | - | 6   | -  | 6   | 4  | 3   | 3  | 7   | 10  | 7      | 4  |    |
| 단양 | 18  | 13  | 0      | 1 | 2   | 1  | 2   | 1  | 0   | 0  | 9   | 7   | 5      | 3  |    |
| 증평 | 11  | 13  | 0      | 0 | 0   | 0  | 1   | 0  | 1   | 0  | 3   | 6   | 6      | 7  |    |
| 전체 | 410 | 231 | 0      | 1 | 34  | 17 | 48  | 13 | 87  | 22 | 116 | 102 | 125    | 76 |    |

주. 2018.9.30. 기준

○ 충북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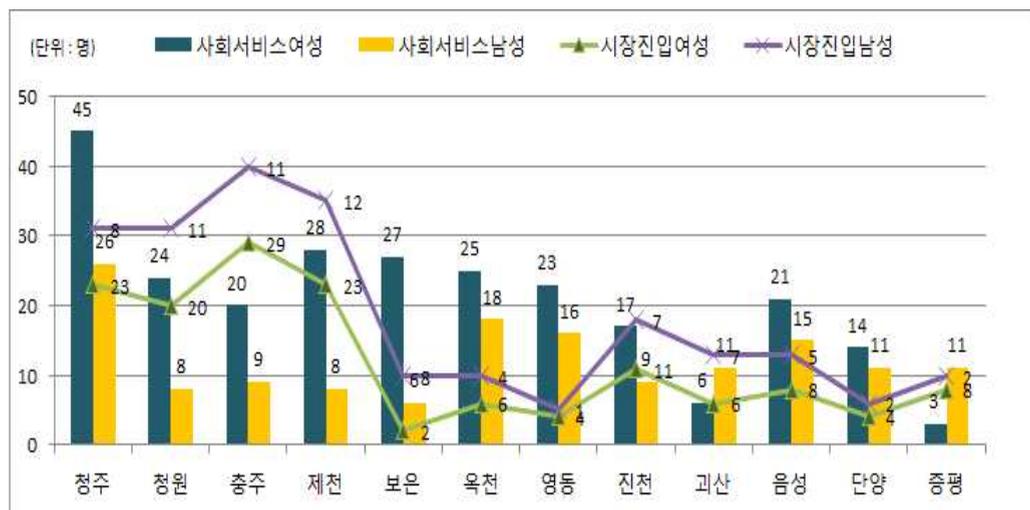
- 사회서비스형 401명(62.6%), 시장진입형 참여자 222명(34.7%), 인턴도우미 16명(2.5%)으로 사회서비스형 참여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성별 차이를 보면 남성 참여자 중 사회서비스형은 148명(64.1%), 시장진입형은 78명(33.8%)이며, 여성 중 사회서비스형은 253명(61.7%), 시장진입형은 144명(35.1%)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사회서비스형의 참여자가 가장 많음
-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 모두 여성의 비율이 높는데 증평과 괴산의 경우 사회서비스형에서 여성 비율이 낮고 보은은 시장진입형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낮은 비율을 보임.
- 인턴도우미형 사업은 1일 5시간 근로로 남성 참여자에 비해 여성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표 Ⅲ-1-10 충북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참여자

(단위 : 명, %)

| 구분 | 전체    | 사회서비스형 |      | 시장진입형 |      | 인턴도우미 |     |   |
|----|-------|--------|------|-------|------|-------|-----|---|
|    |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
| 청주 | 청주    | 102    | 45   | 26    | 23   | 8     | -   | - |
|    | 청원    | 63     | 24   | 8     | 20   | 11    | -   | - |
| 충주 | 75    | 20     | 9    | 29    | 11   | 6     | -   |   |
| 제천 | 71    | 28     | 8    | 23    | 12   | -     | -   |   |
| 보은 | 45    | 27     | 6    | 2     | 8    | -     | -   |   |
| 옥천 | 55    | 25     | 18   | 6     | 4    | 1     | 1   |   |
| 영동 | 44    | 23     | 16   | 4     | 1    | -     | -   |   |
| 진천 | 51    | 17     | 9    | 11    | 7    | 4     | 3   |   |
| 괴산 | 30    | 6      | 11   | 6     | 7    | -     | -   |   |
| 음성 | 50    | 21     | 15   | 8     | 5    | -     | 1   |   |
| 단양 | 31    | 14     | 11   | 4     | 2    | -     | -   |   |
| 증평 | 24    | 3      | 11   | 8     | 2    | -     | -   |   |
| 전체 | 641   | 253    | 148  | 144   | 78   | 11    | 5   |   |
|    | 100.0 | 39.5   | 23.1 | 22.5  | 12.2 | 1.7   | 0.8 |   |

주. 2018.9.30. 기준. 보은 인턴도우미 : 게이트웨이 참여자 포함



【그림 Ⅲ-1-4】 자활근로사업 유형별 참여자 현황

○ 충북 자활근로사업 급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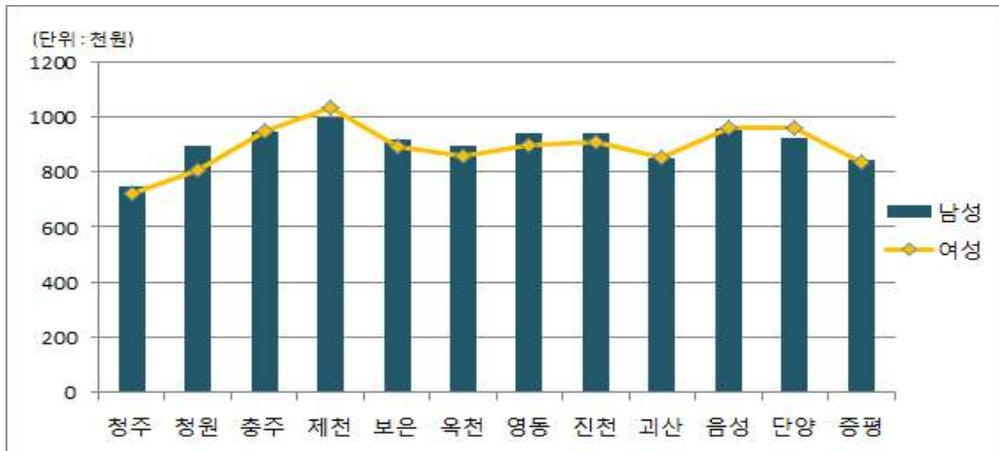
- 사업유형 및 기술자 여부에 따라 인건비에 차이가 있어 성별 임금차이에 대한 단순하고 획일적인 비교는 주의가 필요함
- 여성과 남성간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은 괴산과 음성으로 충주 948천원, 괴산 850천원, 음성 959천원으로 나타남
-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지역은 제천과 단양으로 제천 1,032천원(남성 997천원), 단양 961천원(남성 924천원)임.
-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지역은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증평으로 5천원부터 88천원까지 차이가 발생함. 성별 간 가장 임금격차가 큰 지역은 청원으로 나타남

표 Ⅲ-1-11 충북 자활근로사업 월평균 급여

(단위 : 천원)

| 구분 |    | 여     | 남   |
|----|----|-------|-----|
| 청주 | 청주 | 723   | 750 |
|    | 청원 | 807   | 895 |
| 충주 |    | 948   | 948 |
| 제천 |    | 1,032 | 997 |
| 보은 |    | 889   | 920 |
| 옥천 |    | 857   | 895 |
| 영동 |    | 899   | 941 |
| 진천 |    | 908   | 942 |
| 괴산 |    | 850   | 850 |
| 음성 |    | 959   | 959 |
| 단양 |    | 961   | 924 |
| 증평 |    | 836   | 841 |

주. 2018.9.30. 기준



【그림 Ⅲ-1-5】 자활근로사업 월평균 급여

○ 충북 자활근로사업 사회보험가입자수

- 전체 참여자 641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00명, 국민연금 303명, 건강보험 190명, 산재보험 584명으로 산재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함
- 각 보험의 가입 가능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자의 성별 인원(여성 405명, 남성 236명)에 따라 비중을 살펴보면, 고용보험가입자는 여성 311명, 남성 189명으로 여성 76.8%, 남성 80.1%가 가입
- 국민연금은 여성의 50.1%, 남성 42.4%, 건강보험 여성 29.1%, 남성 30.5%, 산재보험 여성 91.4%, 남성 88.1%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참여자 641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500명, 국민연금 303명, 건강보험 190명, 산재보험 584명으로 산재보험에 가장 많이 가입함
- 참여자의 성별 인원(여성 410명, 남성 231명)에 따라 사회보험가입자 비중을 살펴보면, 고용보험가입자는 여성 311명, 남성 189명으로 여성 75.8%, 남성 81.8%가 가입
- 국민연금은 여성의 59.5%, 남성 43.3%, 건강보험 여성 28.8%, 남성 31.2%, 산재보험 여성 90.2%, 남성 90.0%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자활참여자의 사회보험 가입자격은 각 보험별로 연령, 수급유형에 따라 차이

가 있어 남성과 여성의 가입 비중을 높고 낮음으로 비교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여 본 글에서는 가입자격을 제시하고자함.

- 고용보험은 65세 이전 취업자가 가입하며 국민연금은 60세 이하 수급자는 희망할 경우 가입할 수 있음. 산재보험은 자활참여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수급자는 가입하지 않으나 차상위계층은 가입을 하고 있음.

표 Ⅲ-1-12 충북 자활근로사업 사회보험가입자수

(단위 : 명, %)

| 구분 | 고용보험 |     |      | 국민연금 |     |      | 건강보험 |     |      | 산재보험 |     |      |      |
|----|------|-----|------|------|-----|------|------|-----|------|------|-----|------|------|
|    | 계    | 여   | 남    | 계    | 여   | 남    | 계    | 여   | 남    | 계    | 여   | 남    |      |
| 청주 | 청주   | 40  | 26   | 14   | 35  | 26   | 9    | 12  | 8    | 4    | 75  | 50   | 25   |
|    | 청원   | 20  | 12   | 8    | 20  | 14   | 6    | 8   | 5    | 3    | 36  | 24   | 12   |
| 충주 | 75   | 55  | 20   | 43   | 33  | 10   | 2    | 1   | 1    | 75   | 55  | 20   |      |
| 제천 | 71   | 51  | 20   | 48   | 37  | 11   | 48   | 37  | 11   | 71   | 51  | 20   |      |
| 보은 | 24   | 14  | 10   | 14   | 9   | 5    | 26   | 18  | 8    | 43   | 29  | 14   |      |
| 옥천 | 54   | 31  | 23   | 39   | 23  | 16   | 25   | 13  | 12   | 55   | 32  | 23   |      |
| 영동 | 44   | 27  | 17   | 19   | 16  | 3    | 19   | 13  | 6    | 44   | 27  | 17   |      |
| 진천 | 51   | 32  | 19   | 21   | 17  | 4    | -    | -   | -    | 51   | 32  | 13   |      |
| 괴산 | 29   | 12  | 17   | 22   | 8   | 14   | 15   | 5   | 10   | 29   | 12  | 17   |      |
| 음성 | 50   | 29  | 21   | 20   | 10  | 10   | 17   | 7   | 10   | 50   | 29  | 21   |      |
| 단양 | 18   | 11  | 7    | 22   | 10  | 12   | 14   | 9   | 5    | 31   | 18  | 13   |      |
| 증평 | 24   | 11  | 13   | -    | -   | -    | 4    | 2   | 2    | 24   | 11  | 13   |      |
| 전체 |      | 500 | 311  | 189  | 303 | 203  | 100  | 190 | 118  | 72   | 584 | 370  | 208  |
|    |      | -   | 75.8 | 81.8 | -   | 59.5 | 43.3 | -   | 28.8 | 31.2 | -   | 90.2 | 90.0 |

주. 2018.9.30. 기준. 백분율은 각 성별 총 참여자의 비중임.

#### 4) 자활사업 성과평가 기반 현황 통계

-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성과평가 과정에서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활사업 성과를 취창업 유형 및 탈수급 유형으로 구분하여 세부 현황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며, 이를 종합하여 자활성공 유형별 현황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있음.

- 성과평가 지표는 공통지표 70점, 특성화지표 30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통지표는 다시 참여자의 자활성과(30점)와 사업단 운영성과(17점), 자활기업 운영성과(9점), 센터 운영성과(14점)로 구성되어 있고 특성화지표는 외부자원연계(6점),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12점), 사업개발(12점)로 구성되어 있음.

표 III-1-13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지표 배점 구성

| 구분                     | 지 표 명                     |  | 점수                    |   |
|------------------------|---------------------------|--|-----------------------|---|
| 공통<br>지표<br>(70점)      | ①<br>참여자<br>자활성과<br>(30점) | 일반기업 취·창업, 정부재정투입 일자리(바우처사업단·타기금 사업단 취업), 자활기업 취·창업률 | 7                     |   |
|                        |                           | 급여변동률(탈수급률 포함)                                       | 4                     |   |
|                        |                           | 취·창업유지율  | 4                     |   |
|                        |                           | (참여자)직무교육 이수율  | 5                     |   |
|                        |                           | 인적자본향상   | 5                     |   |
|                        |                           | 자산형성지원   | 5                     |   |
|                        | ②<br>사업단<br>운영성과<br>(17점) | 시장진입형  | 1인당 연평균 수익금           | 4 |
|                        |                           | 사업단  | 1인당 월평균 매출액           | 3 |
|                        |                           |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이용자 전체 만족도 | 3 |
|                        |                           | 형사업단   | 1인당 연평균 수익금           | 2 |
|                        |                           |  | 1인당 월평균 매출액           | 2 |
|                        |                           |  | (참여자)소양교육 이수율         | 3 |
|                        | ③자활기업<br>운영성과(9점)         | 자활기업 참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                                 |                       | 4 |
|                        |                           | 자활기업 사회적 기여율   |                       | 2 |
|                        |                           | 자활기업 사업지속률   |                       | 3 |
|                        | ④센터<br>운영성과(14점)          | 사례관리 체계화 수준  |                       | 7 |
|                        |                           | 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율   |                       | 3 |
|                        |                           | 홍보   |                       | 2 |
|                        |                           | 종사자 1인당 근속일수   |                       | 2 |
|                        | 특성화<br>지표<br>(30점)        | ⑤<br>외부자원연계 (6점)                                     | 외부기관후원 연계             | 3 |
| 종사자 보지지원(복지후생)         |                           |  | 3                     |   |
| 지역의 사회적 공헌 건수          |                           |  | 3                     |   |
| ⑥<br>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12점) |                           | 사회적 경제 협력 건수   | 2                     |   |
|                        |                           |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 4                     |   |
|                        |                           | 자활기업 교육지원(직무)  | 3                     |   |
|                        |                           | 지자체(공공) 위탁사업   | 4                     |   |
| ⑦<br>사업개발 (12점)        |                           | 민간(기업, 단체 등) 외부공모 및 위탁사업                             | 4                     |   |
|                        |                           | 지역특화사업(신규사업노력시도 포함)                                  | 4                     |   |

주.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안내서

- 그런데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인적자본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성과평가를 참여자의 취·창업에 우선하는 것은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 이에 경제적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 방식에서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성과측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성과평가 과정에서 대두되는 또 다른 문제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성별분리 통계가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 졌던 것에 반해 성과평가 항목에서는 성별분리가 되어있지 않음.
- 성과평가는 위의 평가지표 개선이 전제되는 과정 하에 성별에 대한 분리통계가 필요한 상황임. 자활성과에서의 성별분리 통계는 성별에 따른 자활계획 수립 및 정책개발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음.

표 Ⅲ-1-14 자활 성과측정 항목

| 취·창업 유형별 현황 |       |         |         |       |    |        |      |    |      |       |
|-------------|-------|---------|---------|-------|----|--------|------|----|------|-------|
|             | 취업(명) |         |         |       |    | 창업(명)  |      |    | 취·창업 |       |
|             | 일반 기업 | 사우처 사업단 | 타기금 사업단 | 자활 기업 | 소계 | 일반기업창업 | 자활창업 | 소계 | 합계   | 구성 비율 |
| 각 시도        |       |         |         |       |    |        |      |    |      |       |

| 자활성공 유형별 현황 |           |    |     |    |       |    |     |    |      |  |
|-------------|-----------|----|-----|----|-------|----|-----|----|------|--|
|             | 자활성공유형별현황 |    |     |    | 창업(명) |    |     |    | 전체구성 |  |
|             | 취업        | 창업 | 탈수급 | 합계 | 취업    | 창업 | 탈수급 | 합계 | 비율   |  |
| 각 시도        |           |    |     |    |       |    |     |    |      |  |

## 2. 조례 및 지침 분석

### 1) 자활근로사업 지원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자활 지원사업 조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부분·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및 운영·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의 빈곤문제 해결 및 지역복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음.
- 현재 자활사업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전남, 제주 지역이며 자활기금에 관한 조례만 마련되어 있는 곳은 서울, 부산,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제주지역임. 자활사업과 자활기금에 대한 조례를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부산지역임.
- 충북지역은 자활지원사업 기금에 관한 조례는 있으나 자활지원사업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표 Ⅲ-2-1 자활 지원 사업 관련 조례

|    | 자활사업 | 자활기금 |    | 자활사업 | 자활기금 |
|----|------|------|----|------|------|
| 서울 | ○    | ○    | 강원 |      | ○    |
| 부산 | ○    | ○    | 충북 |      | ○    |
| 대구 | ○    |      | 충남 |      |      |
| 인천 | ○    |      | 전북 |      | ○    |
| 광주 |      |      | 전남 | ○    |      |
| 울산 |      |      | 경북 |      |      |
| 대전 |      |      | 경남 |      |      |
| 세종 |      | ○    | 제주 | ○    | ○    |
| 경기 | ○    |      |    |      |      |

주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 law.go.kr. 검색일 : 2018. 12. 3

- 자활사업의 경우 국비지원사업(80%)으로 지자체의 개입 범위는 제한적임. 그러나 관련조례 유무에 따라 지역의 복지정책에 기여하는 바는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신체적 조건이 취약한 근로자를 위한 공간 개선을 위한 근거가 관련 조례를 통해 마련된다면 자활근로사업에서의 성인지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기

여하는바가 클 것으로 사료됨.

## 2) 자활근로사업 관련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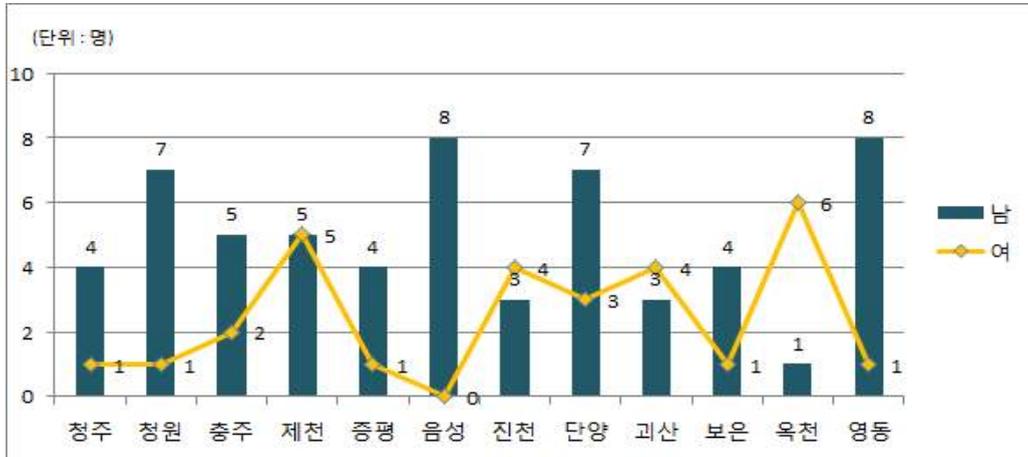
-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을 바탕으로 자활사업 지침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았음. 즉, 성별영향평가의 지표 중 성별 구분, 성별 특성, 성별 균형 참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으로 자활사업 지침 내 성별영향을 검토하였음.
- 그 결과 지침 내용 중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침 제5조는 “① 센터장은 자활센터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활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운영위원회 설치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위원의 자격요건이나 위원 수, 위원의 성비 구성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음. 이와 관련 2018년 기준 충청북도의 12개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위원회 구성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든 지역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 수나 성별비율은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임.
  - 남성과 여성위원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음성지역으로 전체위원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다음 영동지역은 남성이 8명, 여성이 1명이며 청원지역은 남성 7명, 여성 1명으로 성별 격차가 큼. 반면 옥천지역은 여성이 6명, 남성 1명으로 대조적인 양상을 보임.

표 Ⅲ-2-2 지역별 운영위원회 성별 현황

(단위 : 명)

|    | 청주 | 청원 | 충주 | 제천 | 증평 | 음성 | 진천 | 단양 | 괴산 | 보은 | 옥천 | 영동 |
|----|----|----|----|----|----|----|----|----|----|----|----|----|
| 전체 | 5  | 8  | 7  | 10 | 5  | 8  | 7  | 10 | 7  | 5  | 7  | 9  |
| 여  | 1  | 1  | 2  | 5  | 1  | -  | 4  | 3  | 4  | 1  | 6  | 1  |
| 남  | 4  | 7  | 5  | 5  | 4  | 8  | 3  | 7  | 3  | 4  | 1  | 8  |

주 : 각 지역자활센터(2018. 10)



【그림 Ⅲ-2-1】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비율

-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 충북지역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의 성비구성이 매우 불평등한 의사결정 구조 하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3. 사업내용 분석

- 2018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자활근로사업은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 사업의 5대 전국 표준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충북지역자활센터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89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주요 사업내용은 요식업 및 매점이 32.4%로 가장 높고 영농(농산물 재배 및 가공) 20.2%로 주로 음식, 농산물, 가공식품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4)

표 Ⅲ-3-1 충북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구성 현황

(단위 : 개, %)

| 사업분야           | 사업단 수 | 비율   |
|----------------|-------|------|
| 요식업 및 매점       | 29    | 32.6 |
| 미용 홈패션 등       | 6     | 6.7  |
| 자동차관련·부품조립·수선  | 5     | 5.6  |
| 영농(농산물재배 및 가공) | 18    | 20.2 |
| 취·창업교육         | 2     | 2.2  |
| 배송 및 방역        | 6     | 6.7  |
| 인턴 및 도우미       | 8     | 9.0  |
| 청소 및 도시락배달     | 8     | 9.0  |
| 돌봄             | 3     | 3.4  |
| 소모품가공 등        | 4     | 4.5  |
| 전체             | 89    | 100  |

- 이는 그동안 자활사업에 여성 참여자가 다수 분포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 비중이 높았던 사업단 구성이 자활프로그램의 주 사업으로 정착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자활프로그램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음. 실제로 엄명용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남성 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업단 구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남성들의 자활참여 프로그램이 매우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변동 추이(2015년부터 2017년)에서도 남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자활근로사업 운영 시 수요자 대상 욕구파악과 이에 근거한 사업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함.

4) 12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내용을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표 Ⅲ-3-1>은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가공한 data임.

## 4.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및 실무자 FGI 분석 결과

### 1) 심층인터뷰 개요

- 이 연구에서는 사업에 대한 기초자료 확인과 정책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음. 설문조사는 사업진행의 일반적인 사항을 조감할 수 있는 계량적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나 현상적인 내용의 제시에 제한되는 면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심도 있게 포착하고자 심층면접을 선택함.
- 본 연구의 목적이 일반적인 정책 연구와 달리 사업 진행에 작동하는 성별 간 차이를 확인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으므로 심층면접이 이런 목적에 더 잘 부합하는 면이 있음.
- 인터뷰 대상자는 각 지역자활센터 실무자<sup>5)</sup>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이며, 면접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을 구분하여 참여자 인터뷰를 요청하고, 실무자를 포함하여 총 2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함.
- 인터뷰는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2회는 충북여성재단에서 집단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1회는 지역자활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함. 두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각각 구분하여 면접을 실시함.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성별 요구도 분석과 정책 개선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FGI 참여자들의 명단은 아래 <표 Ⅲ-4-1> <표 Ⅲ-4-2>와 같으며, 참여자, 실무자 양측 다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기재하였음. 참여자는 면접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참여 형태와 연령만 확인하였고, 실무자는 현재 지위만 확인하는 것으로 인적사항 파악을 최소화 함.

---

5) 면접 결과에 대한 내용 분석에서는 센터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대상자는 ‘실무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는 ‘참여자’로 명칭을 구분하여 기술함.

표 Ⅲ-4-1 참여자 정보

| 면접대상자 | 성별 | 연령 | 참여유형   |
|-------|----|----|--------|
| 참여자 A | 여  | 53 | 시장진입형  |
| 참여자 B | 여  | 57 | 사회서비스형 |
| 참여자 C | 여  | 48 | 시장진입형  |
| 참여자 D | 여  | 61 | 사회서비스형 |
| 참여자 E | 남  | 52 | 시장진입형  |
| 참여자 F | 여  | 56 | 사회서비스형 |
| 참여자 G | 여  | 52 | 시장진입형  |
| 참여자 H | 남  | 51 | 시장진입형  |
| 참여자 I | 여  | 25 | 사회서비스형 |
| 참여자 J | 남  | 24 | 시장진입형  |
| 참여자 K | 남  | 59 | 사회서비스형 |
| 참여자 L | 여  | 45 | 시장진입형  |
| 참여자 M | 여  | 46 | 사회서비스형 |
| 참여자 N | 남  | 43 | 시장진입형  |
| 참여자 O | 여  | 55 | 시장진입형  |

표 Ⅲ-4-2 센터 실무자 정보

| 면접대상자 | 지위 | 면접대상자 | 지위 |
|-------|----|-------|----|
| 실무자 1 | 실장 | 실무자 5 | 실장 |
| 실무자 2 | 과장 | 실무자 6 | 팀장 |
| 실무자 3 | 팀장 | 실무자 7 | 실장 |
| 실무자 4 | 팀장 | -     | -  |

## 2) 심층인터뷰 내용

- 심층 인터뷰 질문내용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서의 형식에 기초하여 성별 특성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성별요구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근로 환경 개선 요구 등을 포함하였으며, 주요 질문 내용은 아래와 같음.

표 III-4-3 인터뷰 내용

|     | 구분                        | 주요 인터뷰 내용   |
|-----|---------------------------|---|
| 참여자 | 자활사업<br>참여 배경 및 형태        | - 참여 계기 및 유입 경로<br>- 사업 참여의 의미, 급여수준, 근로형태 등<br>- 계약형태와 사대보험 가입여부                                   |
|     | 현재 참여 사업 관련<br>사항 및 향후 계획 | - 현재 담당 업무와 만족도<br>- 사업 참여에의 장애요인<br>- 성희롱 피해 경험 여부 및 대처<br>-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여부<br>-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사   |
|     | 개선 요구                     | -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 사항<br>- 사업 진행을 위한 개선 필요 사항  |
| 실무자 | 사업단 구성 내용과<br>근무환경        | - 사업단 내 사업 내용 구성 방식<br>- 참여자의 계약 형태, 4대 보험 가입 여부<br>- 근로시간 및 근로 형태<br>- 업무 배치 기준과 성별에 따른 선호 사업      |
|     | 참여자의 성별 특성                | - 성비 구성의 변화 여부<br>- 참여자의 성별 특성과 차이<br>- 참여자들 사이 내부 관계 및 성희롱 발생 여부                                   |
|     | 탈자활사업 사례                  | - 참여자의 취. 창업 가능성 및 성공 사례 확인<br>- 중도 탈락 여부와 성별에서의 차이   |
|     | 센터 운영과 개선요구               | - 성인지 교육 실시 및 참여 여부<br>- 센터 운영 애로사항 및 지원 요구<br>- 자활사업 운영 전반에서의 개선 사항<br>- 위원회 구성과 성비 규정 관련 사항 인지 여부 |

### 3) 심층인터뷰 결과

#### 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특성과 성별요구

##### ○ 유입 배경의 성별차이

유입 배경에서는 성별 간 차이가 노정되는데, 여성은 연령이 높아 일반노동 시장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은 알콜의존증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반노동시장 참여에 장애가 있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임.

여자들은 대부분은 고령 쪽으로 가고, 남자들은 알코올리즘이나 암 수술했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수술을 한다면 아니라면 자기 몸에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오는 거죠(실무자 1).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는 루트는 제가 알기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자활사업이라는 것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생활을 경리생활을 좀 하다가 여러 인생의 굴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운이 된 상태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의료수급자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또 어찌어찌 살다가 혼자 살게 되었고, 그래서 조금 더 남자 혼자 산다는 게 더 힘들어지니까 건강이 더 악화가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이 없다보니까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자활사업을 사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케이스인데(참여자 E, 남)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을 했었어요. 그전에는 개인 OO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하루에 잠을 개인 사업이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을 꾸준하게 지속을 해야 되는데, 한 3~4년 정도 지나니까 간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저도 수급자가 본의 아니게 되었어요.....월급이라는 수준이 아니라 집에 있기 뭐하니까,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자. 집에 있으면 계속 늘어지니까, 이게 몸이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악화가 되고,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약 먹고 활동을 조금이라도 하자는 취지에서 이 자활이라는 데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참여자 H, 남)

상대적으로 참여 인원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에는 기초자활수급 대상자라는 점이 참여 배경이나 사업 참여를 통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어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기초자활수급자에 되면서 군청 공무원이 자활센터에 가면 자격증 정보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배우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셔서 소개해주셔서, 제가 가서 직접(신청하게 되었습니다)(참여자 I, 여).

자격증을 자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요. 저도 여기 들어와서 자격증을 여러 개 뒀는데 자격증을 취득을 함으로써 자기의 기술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역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어디 가서도 이 자격증 하나 가지고 다른데 좀 축적되었던 마음이, 이 자격증 하나가 아무 것도 아닌데도 다른 데 이력서 한 번 넣어볼 수 있는 그 기회가 한 번씩 더 주어지는 거예요(참여자 E, 남).

## ○ 참여자의 성별 특성

통계자료에 따른 자활근로참여자들의 성별 구성비를 보면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며, 연령 면에서는 50대 이상 장·노년층의 비율이 현저히 높은 특성을 보임. 이처럼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인적 자본의 수준이 낮아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주요 이유로 작용하며, 개인적 여건에 따라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여성의 성역할이 추가됨. 참여자의 여성 비율이 상대적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성비 구성에서의 변화를 지적하는 지역도 있어서 향후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이 있음.

최근에 남자 분들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 분들이 일용직이나 용역 같은 데 남자 분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계셨다가 거기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서. 그런데다가 연세도 조금씩 드시고 그러니까(실무자 1).

제가 여기 온지 3년 되었는데 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 퍼센트 정도 늘었는지 답변은 제가 못할 것 같고 예전보단 늘긴 늘었어요(실무자 7)

남성의 참여가 늘어나는 변화에 대해 실무자들은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이동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연령 임계치에 도달한 남성이 대체 일자리로 선택하여 유입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음. 자활근로사업으로의 남성의 유입 증가는 단순히 성비 구성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친화적 사업 중심으로 구성된 사업단의 직무 구성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게 됨. 최근 3년간 자활사업 참여자 변화 추이

에서 남성 참여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때문에 새롭게 유입되는 남성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관련하여 향후 성별 비중의 변동 추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돌봄노동을 위한 대안적 노동 참여라는 점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 성별 차이가 뚜렷함. 여성참여자 가운데 어린자녀나 환자가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적 여건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을 돌봄과의 병행이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노동시장 참여 대신 선택하기도 함.

자활근로사업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 내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돌봄노동을 해야 하는 여성들에게는 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가 됨.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을 정도로 낮은 임금을 받음에도 이중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에게는 자활사업 참여가 유의미한 일자리의 역할을 함.

그전에는 회사 다녔죠. 애기아빠가 쓰러지는 바람에 자활에 오게 되었어요...아니 회사가 (임금) 더 높는데 애기아빠가 쓰러지는 바람에 운동도 시킬 겸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수급자 조건 수급자가 되어가지고 셋이 이제 그때는 이제 청소 시작하니까 3시 돼서 끝나고 가 가지고, 애기아빠를 요양원에 보내라는데 안 보내고 내가 집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시키고 그러느냐고 일찍 끝나버려 가지고 여기 또 소개를 시켜주고....보수는 너무 적죠. 근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일찍 끝나고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거 때문에 이제 그거 OO에서 다니고 뭐 들어와서 애기아빠도 돌볼 수도 있고(참여자 C, 여).

애기가 아픈데 다 끊기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애기아빠가 있어도 애기아빠가 잘 아파서 잘 쉬는 편이에요. 보통 쉬면 1년도 쉬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다 끊기면 안돼서 제가 한다고 했죠. 애기도 병원도 들어가고 그 대신 조건을 걸었죠. 저는 애기가 아프면 빠져야 된다. 그래도 된다면 하겠다. 일을,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참여자 M, 여).

문화적으로 여성에게 부가되는 육아책임을 감안하여 여성참여자의 여건을 업

무 배치에 고려하여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도 함. 아래의 사례와 같이 집중 육아기에 있는 여성참여자에게 주거지와 근거리에 있는 사업장에 업무를 배정하여 육아와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저희는 출퇴근 거리를 좀 가깝게 요청하시는,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사업장을 택하시는 경우는 아이를 늦게 보내고 단거리 그 시간에 출근을 하셔야 되고, 시골이니 교통방법이 많지 않아요. 시간 텀이 커서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보다는 근거리.....양육을 사유로 말씀을 하시면 들어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실무자 5).

### ○ 건강수준의 성별 차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가운데는 건강에 문제를 지닌 사람들이 많으며 성별에 따라 내용에서 차이를 보임. 남성은 알코올 의존증 증상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때문에 사업 중간에 이탈하는 사례도 발생함.

알코올 의존증이 많아요. 50% 이상이 알코올 의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우리 알코올 병동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전체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특히 남자 분들이, 거의 다 높아요(실무자 1).

저희는 중도 탈락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성분들끼리 트러블은 많이 없어요. 근데 남성분들 알코올릭 때문에 중도 탈락이 생겨요(실무자 6).

반면 여성은 가족환경으로 인해 우울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많은데, 자녀문제나 지속적인 빈곤에의 노출, 가정폭력에 시달린 삶의 궤적이 우울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임.

남자 분들은 특히 뭐 알코올, 여자 분들은 우울증. 우울감이, 이런 비오는 날이면 아주, 저 같은 경우는 긴장하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저희 같은 경우는 보면 이미 우울증에 만성이 되신 질환자분들이 사실은 많으세요. 그러다보니까 병은 한

두 곳 지금 다 끼고 계시고, 이미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유입이 많이 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약을 복용 하나 안 하나 이런 문제 가지고 짚을 데도 있어요(실무자 3).

그 분들, 이렇게 자라온 환경 이런 게 다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어린 시절, 남편한테 맞고, 애들 뭐 속 썩이고, 자식들 커서도 다 신용불능 돼서, 처음부터가 아니라 계속 쌓여있는 상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사람처럼 일을 못하고 자활로 오시겠죠(실무자 4).

가족환경이 취약하고, 우울증상이 있는 여성참여자에게는 자활근로사업에의 참여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함. 노동을 통해 자존감을 고양하고, 실무자나 동료와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구할 수 있어 우울증 완화에도 도움을 받음. 동료는 서로의 삶을 지지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기능도 하여 여성참여자가 남성에게 비해 중도 탈락이 적고 사업 참여에 지속성을 보임.

여성분들 예를 들면 거의 혼자 사시는 분들이예요. 여자 분들이 다섯 분이 남편이 다 안 계시고 나이가 많으시고, 아니면 요새 예를 들어 두 분은 남편하고 이제 헤어진 이유가 남편이 때려서 도망 나오셔서 이렇게 오신 분들. 그러니까 혼자 사시고, 자식이 두 분은 없고 하니까 결속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의지를 서로 하는 거죠. 어디 아파? 내가 너 병원에 데리고 갈게. 얘기를 봐야 해? 그러면 내가 조금만 더 이 일을 이거 더 할게 그냥 먼저 가. 이렇게 해서 여성분들은 결속이 되게 잘 되어 있고(실무자 4).

그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늘 몰려다니시고, 이제 그래도 이 자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보호를 받았던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분들이 맨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늘 자활에 기대고, 저한테 늘 전화를 해 가지고 자활에 있을 때는 어떻게 지냈던 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희도 어쨌든 지자체랑도 계속하고 또 이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서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올해가 만기다 만땅되어서 이제 나가셔야된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고민 했었죠(실무자 2).

## ○ 직무배치의 성별차이

사업단에서 참여자들을 직무에 배치할 때에는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함. 게이트웨이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시차를 두어 적절한 업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초기 상담에서 이전에 했던 일이나,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기타 자격증의 보유 유무 체크, 개인의 근로 능력의 점검, 본인의 선호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결정하게 됨.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게이트웨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걸친 다음에 거기서 선호 하는 게, 본인이 일단 저희들이 희망직종을 먼저 물어보죠. 그래서 본인이 선호하는 거니까, 사업단 이주 거기 가 봐서 맞는 것을 그렇게 하다가(실무자 1).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일을 하고 사셨는지 직업 경력에 대해서 일단 여쭙보고 했을 때 나는 운전을 몇 십 년 경력이 있고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잘하시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여쭙봐서, 사업단 일에 이러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또 했을 때, 그러면 운전을 잘하시고 자기는, 본인은 운전 외에는 예를 들어서 안 하시겠다 했을 때는 운전할 수 있는 사업단을 설명 드리고, 만약에 그 사업단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업단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1차적으로 잘하시는 거, 2차적으로 더 하실 수 있는 사업단 이렇게 나누는 분류를 해놨다가, 당장 이렇게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른 사업단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참여시키는 게 우선입니다(실무자 C, 여).

보편적으로 다양한 검토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근로 능력이 없을 경우나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직무가 없을 때에는 TO에 따라 배치하기도 함.

참여하시는 인원 분들이 진짜 어떤 특정한 기술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든 시키면 잘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보통 일반 시장보다 그런 근로능력이 조금 저하된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분이 잘할 수 있는 거가 있으면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TO가 꼭 찬 데는 어쩔 수 없이 못 들어가고 그분이 원하시더라도, 거기는 일단 이미 벌써 다 세팅이 되어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거는 게이 트웨이 다 돌려서 한 번씩은 배치를 하는데, 결국에는 TO가 나 있는데(실무자 6).

이상 인터뷰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개인의 근로역량과 선호하는 업무 등 배치를 위한 다양한 검토사항이 있지만 최종 결과는 성별노동분리 현상으로 수렴되는 특징을 보임. 이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구성과 참여자 비율 등을 통해 나타난 성별 분리 현상과 유사한 결과로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도 있지만 남성참가자들은 주로 육체적 힘을 요구하는 일이나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로 여겨져 왔던 영농, 집수리, 재활용품, 양곡 배송, 소독 등과 같은 분야에 배치되고, 여성참가자들은 돌봄노동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돌봄과 같은 업무와, 주로 여성이 담당해온 식품생산, 청소, 세탁, 요리 등의 사업에 배치되어 일반노동시장과 유사하게 성별에 따른 직종분리 현상이 발생하게 됨.

근데 집수리 같은 경우는 여자 구성원이 한 명이 낱까말까 하고, 거의 다 남자 분들이 또 현장 경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본인들이 지원을 하세요. 그런 쪽으로(실무자 2).

성비는 여자 남자가 분명하게 갈려있는 것 같아요. 남자 분들은 영농만, 남자 여자 계시는데 여자 분은 세 분밖에 안 계시고 대부분 남자분이시니까, 나머지는 다 여자분. OO 배수원 사업단도 남자 분(실무자 5).

양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걸 성별 비율을 가지고 염두에 뒀서 참여 한다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여자 분한테 양곡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기피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실무자 7).

뭐 외식사업단이라든지 뭐 반찬이나 아니면 국수를 만드는 사업단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조리나 이런 거 잘하시니까 여성분이 단장을 하고, 뭐 말씀하

셨다시피 양곡 배분 같은 경우 남성분들이 하고(실무자 6).

저희는 여자 분들이 하는 거는 음식이나 뭐 이런 거? 청소, 이런 쪽이 더 유리해요. 학교 같은 데 가서 만약에 청소를 한다 치면 여자 생리대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자 분들이 더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사업단 통보를 할 때 선뜻 뭐 하나 그거 할게요. 본인이 자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자 분은 선뜻 그렇게 내가 청소 가서 학교 청소 이렇게 할게요 하는 분들은 없어요(실무자 2).

### ○ 사업참여의 의미와 가치

인적자본이 취약하고, 연령이 높아 노동시장 참여에 장애를 받는 참가자들이 대부분인 까닭에 임금 수준에는 불만족하지만 일할 수 있다는데 의미를 두고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대체로 만족하는 태도를 보임.

지금 이 생활 하면서 그렇게 작고 월급이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만족스러운 거고, 또 과거에 했던 일이 내가 또 다시 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참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E, 남).

몸이 아픈 상황, 가난한 상황, 그러니까 서로 보듬어주고 돕고 도와줄 수 있는 상생이 미생물하고 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즐거워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가지고 일을 하니까 재미있어하고요. 근데 노동은 노동이죠. 몸을 들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좀 힘들지만 같이 하는 거가 재미있어하고 덕분에 또 노동도 하고 하니까 몸도 조금 뼈 쪽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마음적으로 가벼우니까 좋아진 것 같습니다(참여자 O, 여).

활력도 생기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커피도 먹고 얘기도 잘하고 농담도 하고 그냥 하루가 금방 가요(참여자 I, 남).

더 웃을 수도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회사를 들어가 보면 너 왜 이

거 못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서로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자활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이해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다음에 이렇게 해오면 좋겠네? 서로 그렇게 하니깐 너무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N, 여).

또한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와 관련된 면에서 만족을 표현하기도 함.

저도 일단 자격증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참여와 같은 거 체육대회 같은 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또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I, 여).

자활 통해서 좋은 점이 그 기술 배우는 게 지원을 해주니까, 일반 그냥 나가서 기술 같은 거 이제 자격증 같은 거를 예를 들면 비용이 들잖아요? 비용적으로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자활센터에서는 지원해주는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부담해 주니까 그쪽으로는 좀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J, 남).

자활 다니는 건 월급이나 그런 데는 도움이 없어도 이렇게 교육받을 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받으러 갔지만 교육비도 제가 뭐 어떻게 냈는데, 자활에서 그렇게 교육을 다 해주니까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뭐 배우고, 뭐 그러니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참여자 M, 여).

## 나. 성인지적 근로 환경

### ○ 성희롱 발생과 대처

자활근로사업 수행 과정에서 참여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성희롱 발생을 포착할 경우 센터가 개입하여 문제에 대처하나, 참여자들의 경계로 발생 당시에 사건이 노출되지 않아 사후에 파악하기도 함.

20대 초반 남자애가 20대 초반 여자애한테 그런 성적인 발언?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친구 땀에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된 거를 인지를 하고 있지만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애도 그냥 뭐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냥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잘못된 거를 몰랐다 하면서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이게 참여주민 분들이 실무자 사이에 벽이 있어요. 실무자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일을 시켜드리고 어떻게든 자활을 시켜드리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 우리를 통제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얘기를 안 해요...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는 해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실무자 4).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다른 분들이 수치스러워서 사실 말씀을 못 하셨다고 하면서 자활 판이 치사하고 뭐 있을 곳도 못 되고, 근데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나가는 거다. 쫓겨나는 게 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남자분의 추태, 재활용사업단이었는데 수거하러 나가기 서로 싫어한다. 나가면 강제로 입 맞추고 뭐하고 간혹 새벽에 움직일 때도 있어요. 저희는 수거가, 그러면 이제.....이 건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들어서 돌고 돌아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벌써 한두 달 정도? 그때서야 저희 실무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개입을 해서 그 친구에 대한 그런 뭐 사유서라든지 바로 받고 다시 한 번 그 사업단에 대해서 항상 매년 그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 번 따로 성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친구가 같은 사업단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동을, 재배치를 한다든지(실무자 5).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하는 성희롱 또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됨. 카페와 같이 외부 구매자와 접촉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구매자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이 일어남.

이제 카페이다 보니까 손님들 중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죠....다른 외국인(같은 근무자인 결혼이주여성)이나 그분들은 막 그거를 못 받아드리는 거고 그거를 커버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하고 딱 주의를 하는데, 오는 손님들만 오시는 동네다 보니까 거의 하루에 두 번씩 오시는 분들이 있고, 시골이다 보니까 카페가 없어요. 다방이 하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까 공공의 장소이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 못하는데, 이제 뭐 빵을

한 번 맛보세요 시식용으로 갖다 줄 때 뭐 어찌니 저찌니 하면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 하지마세요 딱 정확하게 하는 쪽으로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니깐 이제 조심은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이제 시골이고 없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새로운 곳에서 오고 하니깐 또 말씨도 서울 말씨 쓰고 하니깐 이렇게 한번 씩 쿡쿡 찌러보고 싶어요 말로 그냥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격이 뭐 똑 부러진다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성격을 이제 많이 아니까 자주 오다보니깐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참여자 A, 여).

노인돌보미 사업과 같이 인적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5)에 따르면, 노인돌보미가 다른 직종보다 폭언이나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환경이어서 주의가 필요한데, 실무자들도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처를 하고 있음.

요즘에 되게 그런 쪽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나니까 저도 이제 그런 문제가 하기 전에는 사업 보는 방향이 없었지만, 걸레질도 할아버지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뒤돌아서 하죠.....여사님들이 요구하시는 거가 앞치마가 앞뒤로 긴 거 여기가 파이지 않은 거.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가 파이지 않아도 식당에서 서빙 받아보면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서빙하시는 선생님들이 일어나고 보면 그냥 평범한 옷이에요 근데 수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사님들이 먼저 아셔서 걸레질을 해도 뒤에가 좀 엉덩이까지 가려지는 거, 두꺼운 거 이런 거를 요구해서 다 저희는 맞춰드려요....근데 할아버지들이 터치를 했다거나 뭔가 행위를 했으면 이건 진짜 계기가 되는데 은근한 어머니들이 모욕감을 느낄 수 있게 걸레질을 하는 뒷모습을 유독 그런 거는 심리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서 저희 주민 분들이 요청하세요. 나 이집 안 들어가겠다. 저 집으로 해 달라 그럼 이제 저희가 서비스 교체를 해드릴 때 그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하셨죠가 아니라 새로 교체되는 서비스여사님들께는 이리이러한 것을 주의해달라고 또 당부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경찰서와 관련해서도 사건은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는 경찰과 관련된 거는 없었지만 서비스 들어가는 대상 각오하라고 했어요(실무자 5).

내부자나 외부인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과 달리 사업 특성에 따라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들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센

터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하기도 함.

외부사람도 만날 경우가 있으니까 혹시나 불미스러운 게 생길까봐 미리 이런 걸 왜 받아두냐면요? 외부사람들하고는 절대 손 접촉이나 이런 거 언어적으로 절대 하지 마세요를 미리 교육시키고 다 받아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실무자 4).

이상에서 확인되듯이 내부 참가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 외부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관계에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음. 성희롱 발생이 확인될 때 센터가 개입하고 대처하지만,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가거나, 문제시 할 때 번거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꺼려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참는 경향이 확인되어 대처에 대한 센터와의 적극적인 공조가 요구됨. 최근 ‘미투’의 확산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성희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소양교육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인 사항 전달에 그치고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교육 내용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센터와의 연대 및 대처 방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음.

#### ○ 참여자 편의성에 대한 고려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지원과 같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가 특정지역 참여자에 의해 제안됨. 업무 내용에 따라 환복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음에도 적절한 탈의실이 없어 창고를 이용하거나, 남성 동료의 시선을 돌리게 한 다음 환복을 하는 불편 사항을 제시함.

아무래도 뭐 이거 외투입고 앞치마 같은 거라도 갈아입으려고 하면 아저씨들 저 쪽 보라고 하고 그렇게 해요(참여자 F, 여).

또한 휴식 시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아쉬움

을 표출한 사례도 있음.

점심 먹고 나면 한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이렇게 앉아있는 것과 조금이라도 허리 피고 누워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 놀러갈 때 그 까만 거 그거 하나 사다 놓고 바닥에서 잠시 아저씨 나가실 때 조금 누워있기도 해요(참여자 G, 여).

참여자들은 탈의실이나 휴게 공간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는 느끼지만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기 보다는 불편을 감수하거나 대체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해결하고 있음. 지역자활센터의 예산이 부족하여 시설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구에 어려움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노동경쟁력이 낮다 보니 일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 만족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임. 고연령자의 비중이 높고,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요구됨.

사업단별로 배치가 되는 것들을 보면 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지 되는 사업단도 있고, 남성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사업단이 있고 그런 식으로 또 분류가 되니까 조금 그런 불편함 정도나 막 감수들을 하시고, 뭐 그냥 이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참여자 E, 남).

변화해서 갖춰줘서 하면 더 없이 좋죠 근데 지금 현재 일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마워하고 일을 하니가 정부에서 예산이 조금 더 나와서 그게 더 연계가 되어서 하면 더 좋아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참여자 O, 여).

예산을 주면 다른 데 쓸 일은 없잖아요. 그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센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가, 그렇게 우리가 뭐 우리는 정부에서 해주는데 안 해줘요 이런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최대한으로 해 주려고 하고, 어쨌든 본인들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발로 뛰어갖고 시장을 넓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고마운 거죠 우리가 뭐 왜 탕비실 안 해줘요? 왜 휴게실 안 해줘요? 이런 소리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참여자 L, 여).

## 나. 사업실무와 실무자 근로 여건

### ○ 감정노동 심화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질문사항으로 고려하지 못했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 있음. 처음, 질문내용은 참여자들에 대한 정책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 실무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포착하게 됨.

면접에 참여한 실무자 거의 전원이 자활근로사업이 일자리 사업과 복지의 두 가지 특성이 병행된 사업이라는 점으로 인해 업무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사업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율하고, 알콜의존증이 많은 남성참여자들의 상황과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여성참여자의 병리적 증상을 돌봐야 하고, 폭언을 하거나 심지어 흥기를 소지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례와 같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까지 있어서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고 함.

한밤중에 12시 넘어서도 술 그 때 먹고서 뭐가 수틀린 게 생각나서 전화해서 욕해요...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제 머리 빠진 거 보이세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실무자 2).

배당할 때 무조건 소득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형 갔다 온지 1개월 지나면 들어올 수가 있게 되어있어요 그 사업 안내보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형 집행하고 출소되고 한 달 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사무실에 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경우 많아요 대드는 사람도 그런게 비밀비재하니까(실무자 1).

알콜의존증에 따른 폭력성으로 인해 남성참여자들로부터는 위협을 당한다면, 우울 증상이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음.

그분들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감정노동을 해야 되고, 또 실무는 실무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정말 상당해서 정말(실무자 3).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한 실무 외, 폭력에 대응하고, 감정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와 관련된 업무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성과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다 보니 스트레스가 높아 센터 실무자들의 이직율이 높음.

주민분(참여자)들한테 제가 뭐를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알콜홀릭자들이 알코올을 하지 않고 여기 나와서 아니면 외톨이가 사회에 나가서 한 사람과 말을 트이기까지가 저희가 노력해주는 시간이 있고, 그 사람의 관계형성을 해주는데 들이는 공이 있잖아요?(실무자 5).

사실 그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업무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실무자 1).

자활이 자활중사자분들이 이직률도 많잖아요? 이직률도 많고, 되게 정말 대접받지 못하면서 일을 해올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참여자분들이 되려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자 3).

높은 이직율은 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사업의 전문성 축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사업의 전문성을 키우고, 사업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스트레스를 이완시키고 이직율을 낮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실무를 포함하여 감정노동까지 병행해야 하므로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질문하자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반응을 보임.

개인적으로 한 번 받아보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실무자 4).

## ○ 실무자의 성인지 감수성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센터 실무자들은 ‘성인지’ 개념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성인지 감수성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지에 대해 질문을 하자 ‘성?’이라고 답하며 교육의 부재로 용어에 친숙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바 있음.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요구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일자리 관련 사업에의 성인지적 관점의 적용 필요성은 선행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선정할 때도 일자리사업과 같은 인적대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그동안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진행된 바 있음.

저희는 성평등 교육은 안 받은 것 같은데(실무자 2).

성평등 교육은 한 번 받았어요 성인지라고 하니까. 성평등 교육은 받은 적이 있어요. OO지역은 받았어요....성희롱 예방 속에서 평등교육이 한 꼭지로 들어가요 (실무자 1)

자활근로사업은 여성참여자가 많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참여가 높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 진행과정을 조명할 필요가 있음. 지역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진행되고 있어서 법정 의무 교육에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을 포함하여 실무자들의 성인지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로 인한 업무피로도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들의 자립을 조력하는 플랫폼의 역할이 목적인 사업임. 사업 참여를 통해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을 지원하고자 하므로 사업평가 기준에 탈자활 정도가 포함되어 있음. 사업의 목적은 그 러하나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더욱이 상

대적으로 노동 경쟁력이 있는 대상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분리해 나간 뒤에는 취·창업이 더 어려워 실무자들이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호소함. 이는 앞서 지역자활센터의 성과평가 지표에서 제시된 경제적 지표에 우선한 성과 중심 평가제도로 인해 현장의 실무자가 경험하는 업무 고충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임.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전에는 10% 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1년에 한번 씩은 두세 명을 내보냈는데.....1년에 한 팀씩은 내보냈어요. 저희가...지금은 전혀 없어요. 몇 년간 하나도 못 내보내고 있어요.(실무자 2).

여기서 이제 취.창업을 해라 취.창업을 시켜라. 이걸로 점수 평가를 낼 테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저희도 웬만하면 내 보내고 싶어요.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솔직히 양심에 걸려도 내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럴 분들마저도 없어요. 이전에 초기에는 그럴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씩 내보내고는 했었거든요. 자활 기업을.....(실무자 1).

예전에 취성패가 생기기 전에는 자활참여자들이 그래도 그래도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와서 창업이나 취업이나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지만, 취성패가 생기면서부터 그 다음에 취성패로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그 외에 조건부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보통 자활 참여자가 되는 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자활 참여자들이 발굴대상자들이 어떤 쪽이냐면 거의...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뭐 문해 뭐 이쪽도 안 되고(실무자 3).

이전에는 취업성공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들이 고용 상담과정에서 다른 사업의 대상자로 구분되면서 자활근로사업으로 유입되는 인력은 연령이 높거나 근로능력이 낮은 대상자가 주를 이루게 되어 취·창업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임.

취업이나 창업 중심의 평가가 가진 난점은 여성참여자의 특성과 연관시켜볼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남. 여성 참여자 중 많은 수가 문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창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렵게 창업하더라도 업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장애가 있음. 과거 빈곤과 성차별로 인한 교육 기회 불평등으로 발생한 비문해자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60대 이상 고연령자에 몰려 있으며 여성의 비중이 높는데, 같은 결과가 자활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됨. 문해능력의 문제점에 더해 고연령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참가자의 연령 또한 상향되게 되므로 자활에 중점을 두는 평가 방식은 실현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됨.

어렵긴 하지만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으며, 성공 사례로는 비누생산, 구내식당, 카페, 재활용품, 세차장, 세탁 등과 같은 다양한 업체가 있음. 이들 사업체의 생존에는 참여자와 센터가 기술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투여하고, 참여자들의 자활 의지 또한 작용한 결과지만 지역 사회의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창업 후 외부로부터의 조력 없이 자생적으로 생존한 사례는 매우 소수에 해당하며 대부분이 외부의 지원에 업체의 존립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아주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창업이나 취업 쪽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현저히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고, 아주 힘들죠 1년에 뭐 진짜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데가 저희도 2018년도 2017년도에 해서 한 곳이 지금 나가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거기는 그래도 OO내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공서나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끼지 않으면 사실은 되게 어렵다 저희도 보고 있는 거고(실무자 3).

매출이 제일 나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쪽보다는, 지금 여기에 매출이 많이 나는 이유는 팔로우가 저희는 OO재단이다 보니까 판매처나 이런데도, 그러다보니까 재구매가 그렇게 해서 안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래도 뭐 어쨌든 판매를 하러 많이 부지런히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희 어쨌든 OO덕을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고,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자꾸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러면서 써보고, 그런 게 입소문이 나면서 조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속

적임이 있기는 해요(실무자 5).

#### ○ 운영위원회 구성 인식

인터뷰에 참여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성비 규정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자 참가자 전원이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며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들어보지도 못한 것으로 답함. 앞선 통계자료 결과에서도 12개 지역의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나 위원의 성비 구성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 이는 최근의 우리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성별 대표성과 의사결정영역의 성비규정 준수에 대한 이해가 사업운영 과정에 반영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결과임. 이에 실무자들이 정책과정에서의 의사결정분야 성별대표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경주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저희도 모르니까 저희도 내년에 새로 저기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60%를 넘으면 안 된다(실무자 1).

---

## V. 결 론

---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2. 자활근로사업의 성인지적 정책개선 방안

CBWF



##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이 스스로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도입의 취지나 내용면에서 매우 이상적인 빈곤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자활근로사업 참여 과정은 근로역량 평가를 기반으로 하며 70점 이하의 평가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45~69점=근로능력 강화대상자, 45점 미만=근로의욕강화대상자) 자활근로사업에 배치됨.
- 참여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이 취약하고, 빈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거나 우울 및 알콜의존 등 심리·사회적 문제까지 안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성별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60:40 비율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으며 연령대는 50대와 60대의 참여율이 높음. 이러한 현황은 전국과 충북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음. 최근에는 남성 참여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 자활근로사업 현황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1) 성인지적 자활통계자료

- 자활사업과 관련한 성인지적 통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활사업 관련 통계는 사회보장 통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중앙자활센터 통계 자료를 통해 생산되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었음. 대표적으로 성과평가 부분에서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참여자의 취·창업 현황, 취업유지율 등 참여자 특성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는 향후 참여자들의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등 자활계획의 기초자료를 확

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 구축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

- 한편 지자체에서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해당 부서에 자료를 청구하거나 중앙자활센터에 요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함. 즉,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활사업관련 통계가 부재한 상황으로 지자체에서 자활근로 사업에 관한 통계자료 수집 경로가 용이하지 않음.
- 이와 관련 자활근로사업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 산출은 성별영향평가에 중요한 기초자료임.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현황에 자료는 사업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내지는 참여자의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

## 2) 자활지원사업 관련 조례 및 지침

- 자활지원사업 관련 조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충북지역은 자활기금에 대한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상황임. 전국적으로 자활사업 지원조례 제정은 약 50% 정도 제정되어 있는 상황임. 자활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으로 지자체의 개입 범위는 크지 않음. 그러나 관련조례의 존재 여부는 사업운영의 추진근거로서 지역의 복지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2018 자활사업 지침에 따르면 사업운영과정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운영위원회 구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 수, 위원의 성비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하여 12개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위원 수가 모두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성별 현격한 격차를 보임. 전반적으로 남성 운영위원 비중이 높은 가운데 여성위원의 수가 전무한 곳도 있음. 이에 정부차원에서 지침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지자체에서도 운영위원회의 성별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음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례관리자 및 Gateway 전담관리자를 통해 상담, 사정, 자활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근로기회제공, 취업알선,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충북지역의 자활사례관리자나 Gateway 전담관리자는 부재한 상황임.

- 자활사업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기준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가 70명 이상이면 Gateway과정 참여자 15명 이상인 경우에만 배치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군단위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임.
- Gateway 전담관리자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실질적 자활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정부차원에서 지침에 대한 개정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3) 자활근로사업 내용 분석

-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12개 지역자활센터 사업내용이 전반적으로 5대 전국 표준화 사업내용의 범위 안에 있으며 주로 여성친화적 사업(여성참여자의 수요에 따른 사업단 구성으로 보임)으로 분류되었던 음식, 식품, 가공식품 등으로 구성 되어 있음. 사업구성단이 여성친화적으로 구성된 것은 지금까지 참여자의 다수가 여성으로써 수요에 부합하는 일자리 개발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남성 자활사업 참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현재 구성된 일자리가 참여자들의 수요에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갖는지는 미지수임. 이에 참여자들의 수요조사 및 그에 부합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할 것임.

### 4) 참여자 및 실무자 대상 FGI 분석

- 사업참여자 및 실무자 대상 FGI를 수행한 결과 참여자들은 근로환경에 대한 열악한 여건이나 조건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으나 감수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참여자들에게 사회참여 의미, 공동체意識, 자활역량 강화와 같은 변화가 동반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사업유형 배치에 따른 성별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참여자들은 주로 육체적 힘을 요구하는, 전통적으로 남성의 일로 여겨져 왔던 영농, 집수리, 양곡 배송 등과 같은 분야에 배치되고 여성참가자들은 청소, 요리, 영농, 가공식품 생산 등 성

별에 따른 직종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여성들은 배우자를 간병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등 족 내 돌봄이 요구되어 돌봄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음.
- 자활근로사업 참여과정에서 참여자들 간, 혹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가하는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음.
- 일자리 특성에 따라 환복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신체적 조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중간에 쉴 수 있는 마땅한 휴식공간이 부재한 경우도 발견 되었음.

## 2. 자활근로사업의 성인지적 정책개선 방안

### 1) 정부 개선 과제

#### 가. 취·창업 위주의 성과중심 평가방식 개선

- 자활근로참여자의 성비 구성 및 연령, 인적자본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나 창업이라는 성과 중심의 평가 기준은 제고될 필요가 있음. 참여자 일반이 근로능력에서 취약성을 보이거나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고, 여성참여자의 대부분이 장·노년의 저학력 빈곤 여성이어서 외부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나 창업이 쉽지 않음. 특히 여성참여자 가운데는 문해가 불가능한 대상자도 많아 창업을 하더라도 독자적인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더해 돌봄노동을 해야 하므로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이동에 제한을 받는 여성의 위치도 성과 중심의 평가가 가진 문제점을 재확인시켜줌.
-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 있듯이 자활근로사업은 고연령·저학력·빈곤 여성참여자들의 인적네트워크 역할을 하여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 생계유지에 기여하는 등 보이지 않는 복지 효과를 수행하고 있

음.

- 때문에 이 사업이 외부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바와 같은 일자리 사업보다 오히려 복지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현행 평가 방식은 사업의 다면적 특성을 간과하는 것임.
- 이러한 점 때문에 성과중심의 평가에 대한 개선 요구는 선행연구에서도 개선된 바 있으나 여성참여자의 성향에 주목하여 개선 필요를 재강조 하는 바임.

#### **나. 성과평가의 성별분리 통계 구축**

- 아울러 평가지표 개선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과평가 과정에서 성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자활사업에 관한 성별분리통계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성과평가의 경우에만 성별분리통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성별특성에 따른 분석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료입력 단계에서 성별요소가 반영되어야 함.

#### **다. Gateway 전담관리자 배치기준 완화**

- 앞서 지역자활센터 사례관리팀 설치 현황을 통해 충북지역의 자활사례관리자나 Gateway 전담관리자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Gateway 전담관리자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에 중요한 인력임.
- 그런데 지역의 여건상 이러한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자활사례관리의 경우 센터 내 구성원들이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Gateway 과정 역시 별도의 인력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이와 관련 2018 자활사업 안내에 따르면 Gateway과정 전담관리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70명 이상이면서 Gateway과정 참여자 15명 이상인 경우에

배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북지역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는 대부분 30명 ~60명 범위 내에 있음. 충주 지역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70명을 초과하였으나 충주 지역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어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례임.
- 다시 말해 자활사업 참여자 수가 중앙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충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Gateway 전담관리자를 두기에는 요원한 상황임.
- 이에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Gateway 전담관리자의 배치기준 완화방안 검토를 제안함.
- 자활관리사업에서 Gateway 과정은 참여자의 초기상담부터 사정, 교육, 계획수립에 이르기까지 참여자의 자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에 실질적으로 추진동력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해야 할 것임.

#### **라. 운영위원회 성비규정 개선**

- 현재 자활사업 지침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위원 수나 성비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지역마다 운영위원 수나 위원의 성비가 모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두었으나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포함의 명시적 근거가 되지 못함.
- 이에 사업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형평성을 위해서는 지침 안에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함.

## 2) 충청북도 개선 과제

### 가. 자활근로사업 관련 성인지적 통계자료 생산

- 특정 정책영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적 통계를 근거로 하며, 성별 분리통계의 생산 및 제공은 정책현장을 포함한 정책과정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러한 성별 분리통계의 활용은 정책 관계자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의 성인지적 관점 제공 등 정책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큼.
- 본 연구에서 드러난 것처럼 현행 자활사업 관련 통계는 사회보장통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의한 행정통계, 중앙자활센터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된 통계 등 다양한 통계 인프라에 의해 생산 및 제공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성별분리 통계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 여전히 성별분리가 부재한 점도 발견되며 성별분리통계가 구축되어 있어도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성인지적 통계 자료 구축을 위한 두 가지 차원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함.
- 첫째, 자활성과의 성별분리통계가 필요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과정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적자본이 취약한 여성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한 일자리에서 단지 경제적 지표만으로 자활성과를 측정하는데 따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이에 대한 제안은 후술한 ‘취·창업 위주의 성과중심 평가방식 개선’에서 다루었음)사업유형별, 성별, 연령별 성과지표는 자활근로사업 고유의 목표인 자활 지원 및 성별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그런데 이상의 논의는 사실상 성과평가를 위해 지역자활센터가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구축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중앙단위에서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지역의 자활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역의 충북지역 자활

사업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자료는 없는 상황임. 연구자의 필요에 의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중앙자활센터에 의뢰하여 요청한 부분에만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자활사업에 관한 지역의 통계자료가 구축된다면 지역자활센터의 사업운영은 물론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자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관련 지침은 광역자활센터가 지역의 자활사업 관련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자활관련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지역자활사업 수행 및 평가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 **나. 충청북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제정**

- 자활사업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함. 자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역의 빈곤문제 해결과 지역복지 향상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일부의 지역에서 자활사업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자활사업과 자활기금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 사업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물론, 국비사업 비중이 높아(80%) 지자체에서 개입의 여지는 크지 않지만 지자체에 관련 조례의 존재 여부는 지역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다를 것임.
- 예를 들어 자활지원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이조차도 없는 지역의 경우 자활사업의 구성이나 추진동력이 작용하는 힘은 다를 것이라 사료됨.
- FGI 결과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등 신체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이 마땅히 쉴 공간조차 부재한 곳이 발견되는 점은 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 등 지자체의 개선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실무자)대상 근로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도 조례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함.

#### **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 성별형평성 유지**

-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의 성비를 보면 12개 지역의 자활센터에 모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위원 수나 위원 성비에 현격한 차이를 보임. 음성지역의 경우 운영위원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동지역은 남성이 8명, 여성 1명, 청원지역은 남성 7명, 여성 1명으로 성별 격차가 대표적인 큰 지역임.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 위원수가 많음.
- 위원회는 의사결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위원의 성비는 의제 선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
- 특히 근로자활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60% 이상이 빈곤한 여성으로 근로환경이나 여건에 대해 특정 성에 대한 감수성이 더 요구된다 하겠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위원 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국내외적 움직임과도 역행하는 결과임.
- 현재 지자체 조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지침에서도 성비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각 지역별 위원 수나 위원성비에 대해 실무자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현재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 관한 위원 수 및 성비규정에 대한 근거는 부재하지만 의사결정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의 성별형평성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권고 등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라.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현재 지역자활센터로 참여자가 의뢰될 경우 상대적으로 기존에 형성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등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음. 그런데 자

활프로그램이 주로 여성친화적인 사업으로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특정성별이 사업 수요 측면에서 더 고려될 가능성이 높음.

- 실제로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단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여성참여율이 비교적 높았던 음식이나 식품가공 등의 근로영역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자활근로사업에 여성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사업설계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취약한 남성 조건부수급자 비율 증가, 자활근로사업에 남성 참여자 비중이 증가하는 점은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2018 자활사업 지침에 따르면 광역자활센터의 주요사업에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바 광역자활센터를 주축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 참여자의 수요를 포함한 자활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아울러 여성의 경우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과 가족 돌봄과 같은 생애 이력이 성별특성에서 드러나는바 자활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여성의 생애 이력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성들의 다양한 생애 경험을 고려하면 이들의 자활계획 수립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 일부 특정 지역에서 환복을 위한 탈의실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심층 면접에서 불편을 제기하기도 함. 참가자들은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은 지적하지만 지역센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태도를 취함.
- 참여자 대부분이 근로 능력이 낮다 보니 일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근로 환경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인데, 고연령자의 비중이 높고,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 차원에서 참여자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 등 방법이 적극 모색될 수 있기를 제안함.

#### **바.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

- 각 지역자활센터는 자체 홈페이지나 카페 형식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물품이나 서비스 내역을 홍보하고 있으며, 충북광역자활센터 홈페이지에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상품을 소개하는 자활생산품 홍보관(<http://www.cbpsc.or.kr/?Page=p05c01>)이 편성되어 있음. 참여자들의 소득 보장은 안정적인 판로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판로 구축이 지속적 생존의 근간이 되므로 가용 가능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 방법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참여자들 가운데는 여성참여자 뿐만 아니라 참여자 1인의 소득에 가족의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홍보 확대를 통해 성과금이 발생할 경우 임금 수준이 높아지므로 자활 촉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한 방법으로 충북광역자활센터의 자활생산품 홍보관을 도청 홈페이지와 연동하여 활용한다면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사. 수요자중심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개발**

##### **(1) 참여자 대상 성희롱 방지 교육 및 예방교육 강화**

- 심층 인터뷰 결과를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외부 서비스 이용자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도 발생하고 있음. 성희롱 발생을 확인했을 때 센터가 개입하여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대처하거나, 공동체에 분란을 일으키기 싫다는 이유로 별도의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발견됨. 성희롱은 참여자들 사이의 유대를 저해하고, 근로 의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참여자와 센터의 공조 하에 예방과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함.

- 현재 자활근로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발생 양태나 대처 방식을 감안할 때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피해 대응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센터의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고, 외부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할 경우 대처 방법과 센터의 조력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한국자활연수원이 자활 및 자립분야 종사자와 참여자대상의 교육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은 광역자활센터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사·도 단위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사업으로서 콘텐츠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함.

## (2) 센터 실무자 대상 성인지 교육 지원

- 지역자활센터의 실무자들은 자활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 진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성인지 감수성’ 또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참여자 대상의 성인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 실무자의 성인지 관점 역시 요구되므로 직무 교육 내용에 성인지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함.

## (3) 센터 실무자들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지원

- 일반적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연구는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는 제시한 바 없는 실무자들의 고충에도 관심을 두고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

안하고자 함.

- 면접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답했던 바와 같이 자활근로사업은 일자리 사업 보다는 복지사업의 성격이 강해 실무자들은 일자리 관련 업무 외, 부가적인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참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절하고, 알콜 의존증과 우울증상을 보이는 참여자들의 병리적 문제까지 돌보는 감정노동자의 역할도 하는 등 다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음.
-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높다는 점을 주목하여 무료심리 상담을 실시하여 정서적 건강을 돕고 있음. 이러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치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스트레스 완화는 업무 효율을 높여 사업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고, 이에 더해 이직률의 낮추어 사업의 전문성 제고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강남식, 신은주, 성정현(2002). 여성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9, 23-50
- 김소형, 김경호(2018). 20대 빈곤청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연구, 사회복지정책, 45(3), 63-94
- 김자옥, 유태균(2018). 자활사업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2), 39-64
- 김현옥(2016). 빈곤여성의 자활근로 참여과정과 참여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2(2), 199-239
- 문진영(2001). 생산적 복지제도의 구축방안 :공공부조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6(1), 143-173
- 박정호(2010). 자활사업 참여자의 특성과 자활성과, 사회복지연구, 41(3), 163-184
- 방하남, 황덕순(2002). 노동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18(2), 71-96
- 백선희(2000).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본 저소득 실업자에 대한 분석과 자활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한국사회복지학, 43, 76-105
- 백학영, 고미선(2007).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 진입 전망에 관한 연구: 여성가장의 자활사업 참여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83-114
- 송인한, 박장호, 김리자(2012). 준·고령층과 청장년층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의지 영향요인 비교분석, 한국노인학, 33(1), 183-197
- 신명호(2007). 근로연계복지 제도로서 우리나라 자활사업의 특징, 도시와 빈곤, 89, 69-92
- 엄명용, 한창근, 최현수(2014). 자활사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부
- 엄태영, 주은수(2011).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 영향요인 연구 : 서울, 경인지역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조원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서울시연구, 12(2), 169-187
- 우준희(2010). 근로연계복지로서 한국 자활지원사업의 한계와 가능성, 대한정치학회보, 17(3), 19-50

- 이미영(2013).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계속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243-261
- 이상은, 전세나(2012). 자활사업의 사회적 배제 감소효과, 사회복지연구, 43(3), 151-179
- 이은정(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영향요인 연구: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531-548
- 임동진(2001). 근로연계복지를 위한 자활사업의 실증적 정책과제 연구, 한국행정논집, 13(1), 67-86
- 임진섭(2013). 중고령 자활사업 참여자의 지각된 자활 성과만족에 관한 연구, 20(4), 37-75
- 조준용(2013). 자활제도 참여자의 자활경험과 전망에 대한 종단적 질적 연구, 13(10), 313-324
- 지규옥(2015). 한국 자활사업의 형성과 변동에 관한 연구-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자활사업안내(Ⅰ)
- 보건복지부 [www.mohw.go.kr](http://www.mohw.go.kr)
- 복지로 [www.bokjiro.go.kr](http://www.bokjiro.go.kr)

#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5호, 2018. 3. 27,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과) 02-2100-6172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1. "성별영향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3. 27.>

##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개정 2018. 3. 27.>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3. 27.]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9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

1. 시행 중인 법령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2. 3.,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7. 3. 21.,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매년 반영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12. 20.]

[제목개정 2018. 3. 27.]

**제11조(정책 등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책, 사업(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 권고를 하는 경우 그 개선의 조치기한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받은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개선 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및 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③ 제2항에 따라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을 제출한 기관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 권고, 의견 표명,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및 개선 조치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3. 21.>

[제목개정 2016. 12. 20., 2017. 3. 21.]

**제12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8. 3. 27.>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분석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 체계 <개정 2018. 3. 27.>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제목개정 2015. 2. 3., 2018. 3. 27.]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7.>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목개정 2018. 3. 27.]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2. 3., 2017. 3. 21., 2018. 3. 27.>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6. 12. 20., 2018. 3. 27.>

[제목개정 2016. 12. 20., 2018. 3. 27.]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27.>

[제목개정 2018. 3. 27.]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여성가족부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② 여성가족부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8. 3. 27.]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여성가족부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3. 27.>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여성가족부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여성가족부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3. 27.]

**부칙** <제15545호, 2018.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석·평가"를 "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지역자활근로사업단 현황 및 사업내용

| 시군명 | 센터명        | 구분      | 사업단 명    | 사업내용     |                                 |
|-----|------------|---------|----------|----------|---------------------------------|
| 합계  | 합계         |         | 89       |          |                                 |
| 청주시 | 청주 지역 자활센터 | 소계      | 7        |          |                                 |
|     |            | 시장 진입형  | 다담채      | 요식업 및 매점 | 가정식백반, 돌솥밥 판매                   |
|     |            |         | 자활마켓     | 요식업 및 매점 | 식자재 유통                          |
|     |            | 사회 서비스형 | 윈트푸드     | 요식업 및 매점 | 먹거리 제조 및 판매(누룽지, 간식, 푸딩, 초코렛 등) |
|     |            |         | 다담갤러리    | 서비스 등 기타 | 압화, 인테리어소품, 액세서리 파견교육 등         |
|     |            |         | 슬기디자인    | 서비스 등 기타 | 다양한 일상용품 제작 및 홈패션               |
|     |            |         | 행복나무     | 서비스 등 기타 | 자동차 부품조립(와이어링하네스)               |
|     |            |         | 산애들에     | 영농       | 애호박 시설재배 및 납품                   |
|     | 게이트웨이      |         |          |          |                                 |
|     | 청원 지역 자활센터 | 소계      | 8        |          |                                 |
|     |            | 시장 진입형  | 웰빙반찬로컬푸드 | 요식업 및 매점 | 반찬제조판매, 출장상차림 및 배달, 로컬푸드매장      |
|     |            |         | 빵빵한행복    | 요식업 및 매점 | 제과제빵제조 및 커피 판매                  |
|     |            |         | 하늘애      | 영농       | 애호박 및 기타작물 재배판매                 |
|     |            | 사회 서비스형 | 원원사업     | 서비스 등 기타 | 취창업을 위한 기술습득 유료지원               |
|     |            |         | 봄에       | 영농       | 국수 와 돈까스 배달 전문사업                |
|     |            |         | 죽심리      | 요식업 및 매점 | 건강식 죽 전문사업                      |
|     |            |         | 한두레영농    | 영농       | 농산물생산및납품, 절임가공사업                |
|     |            | 인턴도우미형  | 자활도우미    | 인턴도우미    | 자활근로사업 업무보조                     |
|     |            | 게이트웨이   |          |          |                                 |

| 시군명 | 센터명          | 구분         | 사업단 명   | 사업내용     |                              |
|-----|--------------|------------|---------|----------|------------------------------|
| 합계  | 합계           |            | 89      |          |                              |
| 충주시 | 충주지역<br>자활센터 | 소계         | 12      |          |                              |
|     |              | 시장<br>진입형  | 연수원밥상   | 요식업 및 매점 | 식당운영(한국자활연수원 구내)             |
|     |              |            | 자활매점    | 요식업 및 매점 | 매점운영(한국자활연수원 구내)             |
|     |              |            | 토탈뷰티    | 서비스 등 기타 | 토탈미용서비스                      |
|     |              |            | 양곡배송사업단 | 배송       | 정부양곡 및 경로당 양곡 배송             |
|     |              |            | 맛나라     | 요식업 및 매점 | 취약계층 밑반찬 및 식당운영              |
|     |              | 사회<br>서비스형 | 영농      | 영농       | 농작물재배                        |
|     |              |            | 에코방역    | 서비스 등 기타 | 재생자전거 생산 및 판매, 방역            |
|     |              |            | 다솜      | 서비스 등 기타 | 종이접기 및 판매                    |
|     |              |            | 보송      | 서비스 등 기타 | 세탁서비스                        |
|     |              |            | 맛깔손     | 서비스 등 기타 | 신규 메뉴개발을 통한 납품 및 판매업(만두판매 등) |
|     |              | 인턴<br>도우미형 | 자활도우미   | 인턴도우미    |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업무보조           |
|     |              |            | 복지시설도우미 | 인턴도우미    | 사회복지시설 지원, 파견                |
|     |              | 게이트웨이      |         |          |                              |
| 제천시 | 제천지역<br>자활센터 | 소계         | 6       |          |                              |
|     |              | 시장<br>진입형  | 카페동네    | 요식업 및 매점 | 커피와 브런치                      |
|     |              |            | 건강마을    | 요식업 및 매점 | 두부 및 건강즙 제조, 판매              |
|     |              |            | 자원재활용   | 청소, 재활용  | 재활용폐기물품 수거 및 분류, 판매          |
|     |              | 사회<br>서비스형 | 해드림     | 서비스 등 기타 | 건물유지관리, 소독, 청소용역 전문          |
|     |              |            | 황금뜰판    | 영농       | 농산물재배, 판매                    |
|     |              |            | 반찬하는날   | 요식업 및 매점 | 취약계층 밑반찬 및 가정식 반찬판매          |
|     |              | 게이트웨이      |         |          |                              |

| 시군명   | 센터명           | 구분         | 사업단명    | 사업내용     |                      |
|-------|---------------|------------|---------|----------|----------------------|
| 합계    | 합계            |            | 89      |          |                      |
| 보은군   | 보은 지역<br>자활센터 | 소계         | 7       |          |                      |
|       |               | 시장<br>진입형  | 으뜸한우    | 영농       | 한우사육                 |
|       |               |            | 희망나래    | 배송       | 양곡배송                 |
|       |               |            | 밥먹는김애   | 서비스 등 기타 | 조미김 생산 및 판매          |
|       |               | 사회<br>서비스형 | 푸른농장    | 영농       | 작물재배 및 판매            |
|       |               |            | 꿈한봉지    | 서비스 등 기타 | 쇼핑백 임가공              |
|       |               |            | 지역돌봄서비스 | 서비스 등 기타 | 돌봄서비스                |
|       |               |            | 아이자람공부방 | 서비스 등 기타 | 공부방운영(2개소)           |
| 게이트웨이 |               |            |         | 맞춤형 사례관리 |                      |
| 옥천군   | 옥천 지역<br>자활센터 | 소계         | 10      |          |                      |
|       |               | 시장<br>진입형  | 재활용     | 청소, 재활용  |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판매      |
|       |               | 사회<br>서비스형 | 디딤돌     | 서비스 등 기타 | 약기 및 부품조립            |
|       |               |            | 들향기     | 영농       | 시설하우스 농산물재배 판매       |
|       |               |            | 새로이세차   | 서비스 등 기타 | 자동차 세차               |
|       |               |            | 한울타리    | 영농       | 농산물재배 판매             |
|       |               |            | 나눔마켓    | 요식업 및 매점 | 커피, EM 판매            |
|       |               |            | 가공      | 서비스 등 기타 | 김구이, 농산물가공 판매        |
|       |               | 인턴<br>도우미형 | 시범      | 요식업 및 매점 | 외식업(국수 등) 판매         |
|       |               |            | 복지도우미   | 인턴도우미    | 각 읍면 복지도우미           |
|       |               |            | 자활도우미   | 인턴도우미    | 사회복지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도우미 |
| 게이트웨이 |               |            |         |          |                      |

| 시군명         | 센터명              | 구분          | 사업단 명           | 사업내용     |                           |
|-------------|------------------|-------------|-----------------|----------|---------------------------|
| 합 계         | 합 계              |             | 89              |          |                           |
| 영동군         | 영동<br>지역<br>자활센터 | 소계          | 4               |          |                           |
|             |                  | 시 장<br>진입형  | 다운              | 요식업 및 매점 | 손두부, 누룽지, 빵튀기 제조 및 판매     |
|             |                  | 사 회<br>서비스형 | 미래영농            | 영농       | 농산물(포도,고추 등)재배 및 판매       |
|             |                  |             | 납품              | 서비스 등 기타 | 소모품 임가공(쇼팽백 등)            |
|             |                  |             | 별지기             | 영농       | 양봉사업(아카시아꿀, 잡화꿀 생산)       |
| 게이트웨이       |                  |             |                 |          |                           |
| 증평군         | 증평<br>지역<br>자활센터 | 소계          | 5               |          |                           |
|             |                  | 시 장<br>진입형  | 가마솥누룽지          | 서비스 등 기타 | 누룽지과자제조 및 판매              |
|             |                  |             | 클린카             | 청소, 재활용  | 출장세차, 청소용역                |
|             |                  |             | 김구이             | 서비스 등 기타 | 구이김, 김자반 제조 및 판매          |
|             |                  |             | 가온비             | 요식업 및 매점 | 휴게음식점(구내식당, 매점)           |
| 사 회<br>서비스형 | 푸른들              | 영농          | 농작물 생산 판매       |          |                           |
| 게이트웨이       |                  |             |                 |          |                           |
| 진천군         | 진천<br>지역<br>자활센터 | 소계          | 8               |          |                           |
|             |                  | 시 장<br>진입형  | 배송              | 배송       | 양곡배송,양곡배송, 급식 및 도시락 배송서비스 |
|             |                  |             | 외식              | 서비스 등 기타 | 반찬류 판매                    |
|             |                  |             | 카페형매점           | 요식업 및 매점 | 카페, 매점운영(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             |                  | 사 회<br>서비스형 | 영농              | 영농       | 농작물재배, 절입매추               |
|             |                  |             | 급식              | 서비스 등 기타 | 노인,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
|             |                  | 인 턴<br>도우미형 | 김구이             | 서비스 등 기타 | 채래김 김 구이                  |
| 복지시설도우미     | 인턴도우미            |             |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          |                           |
| 인턴도우미       |                  | 인턴도우미       | 자활기업 및 기업체 취업지원 |          |                           |
| 게이트웨이       |                  |             |                 |          |                           |

| 시군명        | 센터명              | 구분         | 사업단 명            | 사업내용     |                       |
|------------|------------------|------------|------------------|----------|-----------------------|
| 합계         | 합계               |            | 89               |          |                       |
| 괴산군        | 괴산<br>지역<br>자활센터 | 소계         | 7                |          |                       |
|            |                  | 시장<br>진입형  | 외식               | 요식업 및 매점 | 국수, 커피 판매             |
|            |                  | 사회<br>서비스형 | 농원               | 영농       | 농산물재배 및 판매            |
|            |                  |            | 기쁨드림빨래터          | 청소, 재활용  | 이동취약계층 빨래지원           |
|            |                  |            | 반찬사업단            | 요식업 및 매점 | 반찬판매                  |
|            |                  |            | 출장스팀세차           | 청소, 재활용  | 출장 스팀세차               |
|            |                  |            | 정부양곡배송           | 배송       | 양곡배송                  |
|            |                  |            | EM마을들꽃향기         | 서비스 등 기타 | EM비누생산, 공방운영, 마을샛강살리기 |
|            |                  | 게이트웨이      |                  |          |                       |
|            |                  | 음성군        | 음성<br>지역<br>자활센터 | 소계       | 9                     |
| 시장<br>진입형  | 마이커피             |            |                  | 요식업 및 매점 | 카페, 매점운영(한국소비자원 내)    |
|            | 구두발자국            |            |                  | 서비스 등 기타 | 구두수선                  |
|            | 꽃향기              |            |                  | 요식업 및 매점 | 카페, 천연비누제작 판매(음성군청 내) |
|            | 미리내              |            |                  | 요식업 및 매점 | 매점운영(음성군청 내)          |
| 사회<br>서비스형 | 청소대장             |            |                  | 청소, 재활용  | 공공기관 청소               |
|            | 제터먹이             |            |                  | 서비스 등 기타 | 누룽지, 효소음료 등 가공판매      |
|            | 곰비임비             |            |                  | 배송       | 정부양곡 배송 및 재활용품 수거, 판매 |
| 파일럿        | 아이스잡             |            |                  | 서비스 등 기타 | 아이스팩 제조               |
| 인턴<br>도우미형 | 복지시설도우미          |            |                  | 인턴도우미    | 사회복지시설 지원             |
| 게이트웨이      |                  |            |                  |          |                       |

| 시군명 | 센터명              | 구 분         | 사업단 명 | 사업내용     |             |
|-----|------------------|-------------|-------|----------|-------------|
| 합 계 | 합 계              |             | 89    |          |             |
| 단양군 | 단양<br>지역<br>자활센터 | 소계          | 6     |          |             |
|     |                  | 시 장<br>진입형  | 재활용   | 청소, 재활용  | 다육 및 과수     |
|     |                  |             | 제과제빵  | 서비스 등 기타 | 천을 이용한 소품제작 |
|     |                  | 사 회<br>서비스형 | 누룽지   | 요식업 및 매점 | 영춘지역 아동공부방  |
|     |                  |             | 행복드림  | 청소, 재활용  | 관광지 청소용역    |
|     |                  |             | 꿈드림   | 청소, 재활용  | 기관내 파견 청소용역 |
|     |                  |             | 영농    | 영농       | 다육 및 과수     |
|     |                  | 게이트웨이       |       |          |             |

연구 2018-07

## 충북 자활근로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인 : 권 수 애

발행처 : 충북여성재단

(2878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TEL 043-285-2426~8

FAX 043-285-2429

ISBN 979-11-89532-05-5 (93330)

---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충북여성재단에 있습니다